

하루 30리

대한민국
귀농·귀촌
옥천

옥천군 귀농·귀촌 매뉴얼



대한민국
귀농·귀촌
옥천

옥천군 귀농·귀촌 매뉴얼

목차

01 귀농 귀촌성공을 위한 준비사항

- 성공적인 귀농청착요령 6 귀농을 시작하며
- 9 정착지물색
- 10 영농 기술 습득
- 11 농지, 주택확보
- 12 귀농, 정착
- 13 터 선정시 확인 사항
- 21 농지를 집터로 만들기
- 23 산지를 집터로 만들기
- 26
- 귀농귀촌주거를 위한 터 안내
- 귀농10계명

02 귀농 · 귀촌 길라잡이

- 배우자 동의 없는 귀농은 반드시 실패한다 28
- 귀농은 단순 이사가 아닌 사회적 이민 33
- 귀농지를 선택할 때는 한눈에 반하지 마라 36
- 귀농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창업의 길 40
- 왜 귀농하려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세워라 44

03 민원사무 길라잡이

- I. 종합민원과 소관 46
 - 1. 여권발급 신청 46
 - 2. 토지(임야) 합병신청 48
 - 3. 토지(임야) 분할신청 50
 - 4.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52
 -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6
 - 6. 진정 59
 - 7. 건의 61
- II.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63
 - 1. 농지전용허가 신청 63
 -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 66
 - 3.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 69
- III. 주민복지과 소관 72
 - 1.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 72
 - 2. 개장허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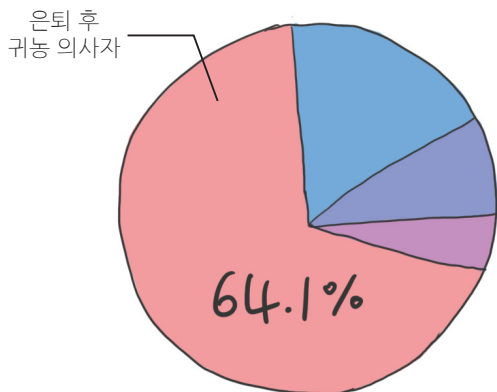
	81	3.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84	4.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
IV. 환경과 소관	90	1. 내수면어업허가
	95	2. 내수면어업신고
V. 산림녹지과 소관	98	1. 산지전용허가신청
	101	2.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104	3. 산지전용신고
	107	4. 산지전용 변경신고
VI. 안전건설과 소관	110	1. 골재채취허가
	114	2. 도로점용허가
	121	3. 하천점용허가
VII. 도시건축과 소관	126	1. 개발행위허가
	134	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143	3. 건축허가
VIII.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4	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167	2.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IX. 읍면 소관	170	1. 출생신고
	173	2. 사망신고
	176	3. 혼인신고
	179	4. 이혼신고
	182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185	6.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187	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93	8. 농지전용신고
	196	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98	10.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준비사항

귀농을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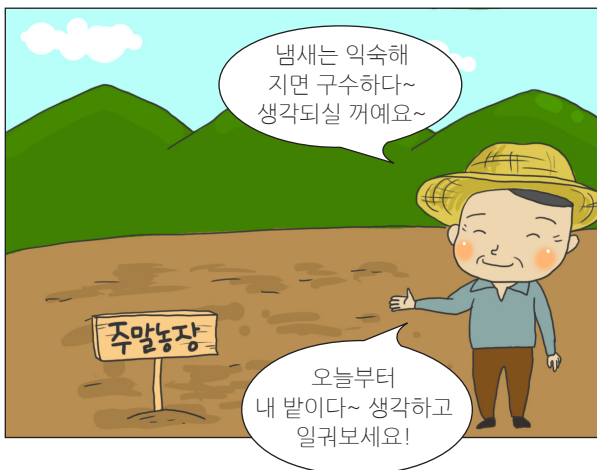
대상: 도시거주 35세 이상 성인남녀
(2007년 농촌진흥청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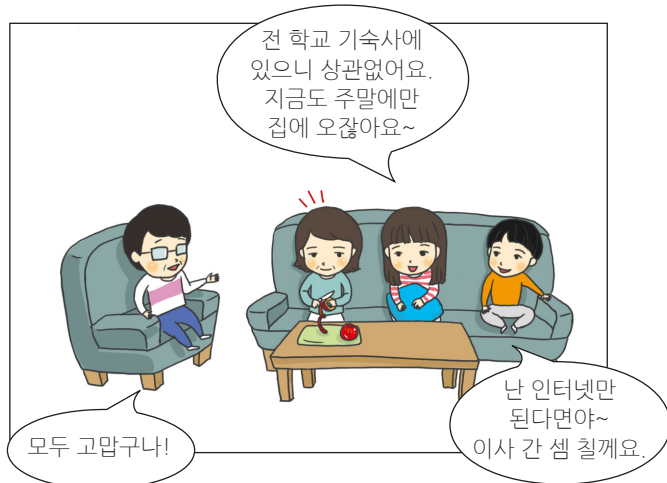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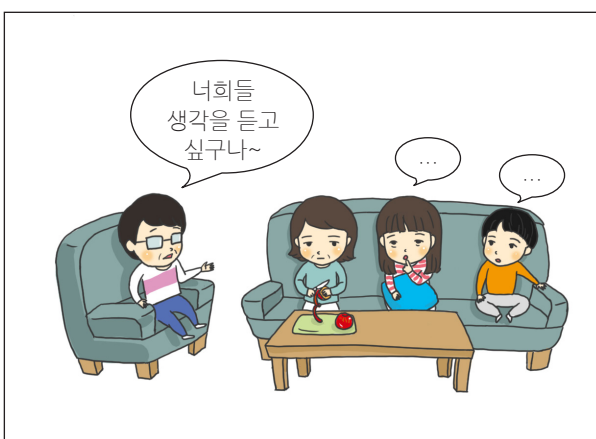


귀농 관련 정보는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 하거나 각 기관의 귀농 업무 담당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친척농가, 홈스테이 농가 등에서 숙식하면서 농촌 생활을 관찰해 보시고 '농촌 일손 돕기', '체험농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영농을 체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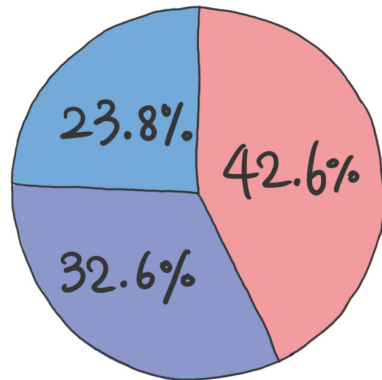




가족의 동의는 귀농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편, 아내의 일방적 주장으로 귀농을 한다 해도 불편함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적극적인 동의는 이후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착지 물색

정착지는 가족, 작물, 기존의 사회 활동은 물론 경제력과도 깊고 큰 연관을 가지고 있어, '정착자'의 여건과 '정착지'의 여건이 얼마나 부합되고 절충 되느냐에 따라 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내 위치, 주택의 선택이 달라 집니다.



- U턴형 고향농촌 → 도시 → 고향농촌
- J턴형 고향농촌 → 도시 → 다른농촌
- I턴형 고향도시 → 농촌

<귀농의 유형>



영농 기술 습득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정도로 노하우가 쌓였을 즈음에는 소득 순위가 여러 차례 바뀐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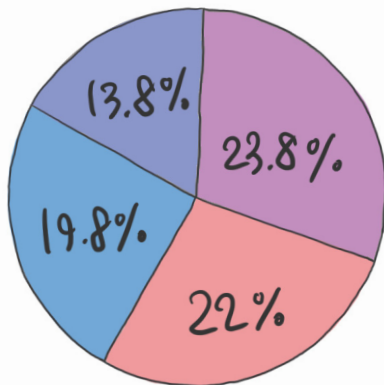
때문에 연구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나, 농수산물 시장 혹은 생산자 등을 찾아 정확한 정보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영농 기술은 책보다는 실기가 중요합니다.



영농 이웃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기술 습득 유형>

- 농업기술센터 23.8%
- 이웃농민 22%
- 귀농 교육 프로그램 19.3%
- 서적 13.8%

농지, 주택확보

농지, 농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나침반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세요.
물론 토지, 건물의 등기,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 및 담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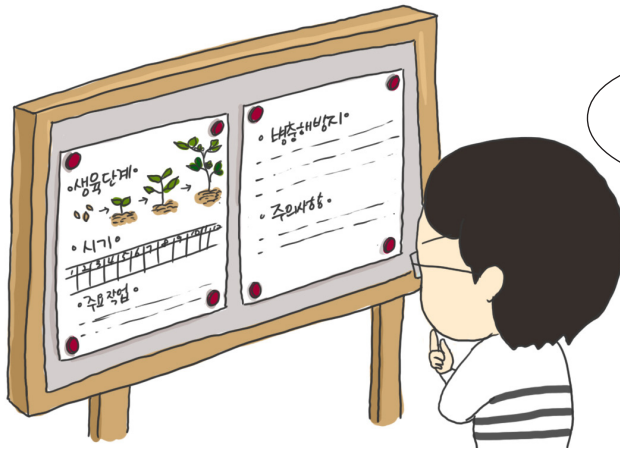
주택을 신축할 경우는 귀농 경험자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은 일반 신축의 경우와 다른점이 많습니다.



자기 안목을 고집하기 보다는 경험자나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후회가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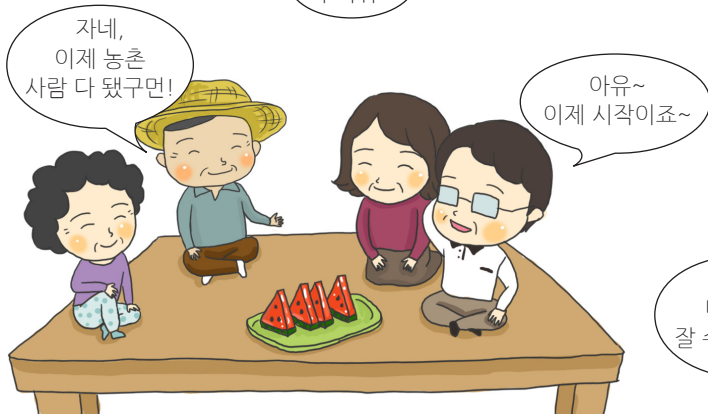


안정된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4-5년) 예상되는 여유자금과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농 계획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작물재배력(달력)등을 확보하여 시기를 잊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 후, 전문가에게 검토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정착



직접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도시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농촌문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한 가전기기 수리법이나 아플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조치법을 배워두면 이웃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터 선정시 확인 사항

1. 좋은 집터란?

1) 남향 /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
북향 / 서향인 부지는 집이 어둡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북서풍 차단
겨울이 따뜻함

동남풍으로
여름은 시원함

2) 부지와 교감이 느껴지는 곳.
아침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
경사가 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오오~
기운이
솟는다~!

3)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

산맥이 끊어지지 않음

부지와 하천 사이에
주식생산지(논, 밭)가
형성됨

전망이 좋음

북서풍을 막아줌

빗물과 생활용수가
하천으로 배출됨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시야, 전망이 탁 트임

완만한 경사의
야산과 접해 있음

평지보다 약간 더
경사가 있는 곳

시야안에 물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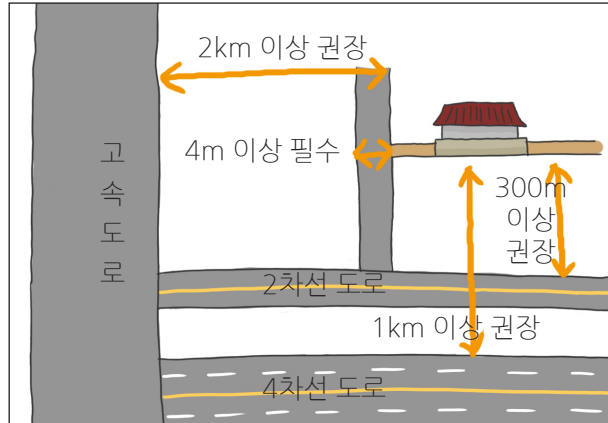
모든 조건을 갖춘 명당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 귀농, 귀촌 집터 선정시 살펴야 할 중요사항

1)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 있는가.

주택을 지으려면 대지의 4면 중 최소 한 부분이 도로(폭4m 이상)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진입로 없는 맹지(盲地)는 합법적인 건축이 불가능하고 땅값도 낮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지도에는 없지만 만들어져 있는 도로)보다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기준이며, 공동도로가 아닌 개인도로일 경우 건축허가시 도로 주인의 동의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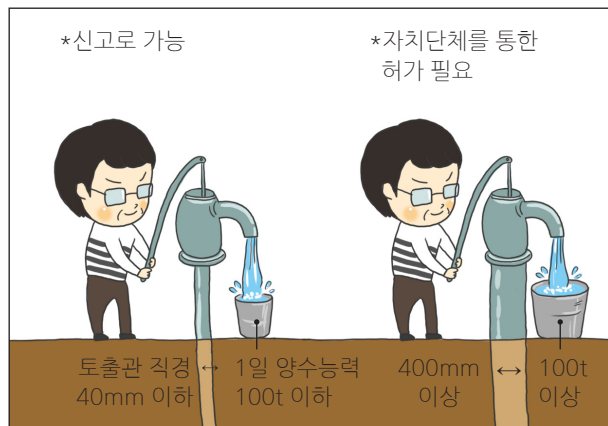


2) 식수문제

귀농, 귀촌 주택의 경우 마을과 거리(100-200m)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의 상수도나 우물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수문제를 소홀히하여 이웃과 분쟁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세요.

지하수 개발비용은 공당 600-800만원 정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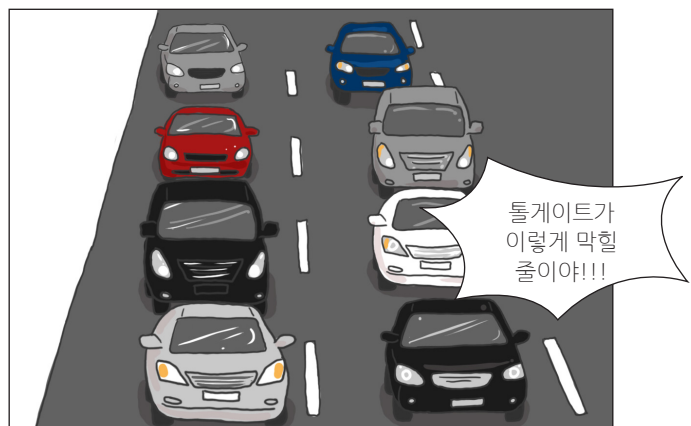


3) 인근 도시, 생활 중심지역과의 연계여부

귀농, 귀촌 생활은 오지 생활이 아닙니다. 읍·면·행정 소재지와 가까워야 생필품 조달이나 의료, 교육,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출퇴근을 원하는 경우, 차로 1시간~1시간 30분의 거리가 좋습니다.(교통체증과 비포장도로 감안)

또한 승용차를 이용 못할 상황을 대비해 버스 운행 도로와 200m이내의 입지를 택하세요.





4) 교육환경

자녀 교육 문제는 귀농, 귀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귀농, 귀촌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 초·중·고학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변 학교의 입지 상황을 고려하세요.

임시 위주의 제도 교육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간디 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지역주민의 성향

마을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집성촌과 같이 씨족 사회의 향토색 짙은 배타적 지역성을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주민의 텃세로 귀농, 귀촌 생활을 중도 포기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6) 인·허가에 대한 사전 점검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수질보전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건물규모, 용도 등의 여러가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 설정은 인·허가상 사용승낙서 첨부, 준공 후 등기이전의 제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법적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하수처리 문제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규제(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지역, 공원보호구역 등)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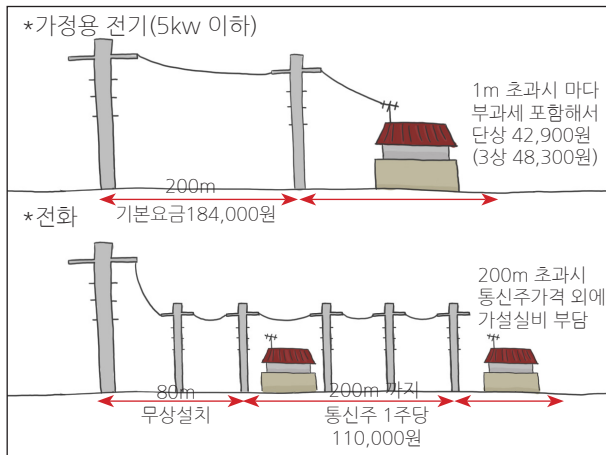
개울이 남의 토지를 지나 있다면,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인접토지 소유주가 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줄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8) 전기 / 통신 / 인터넷 / 방송선로 이용문제

전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9) 경제와 도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

우선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소유주관계, 담보관계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두세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조사)

현장답사시는 물리적인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측량이 필요할 수가 있으며(전문가와 상의), 지역주민에게 부지에 대한 정보(동네의 미풍양속 등)를 확보하세요.





10) 지적공부 확인

미리 지적도로 공부한 것들(위치, 도로, 토지모양, 경계선 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임야는 산등성이와 필지간 경계가 모호해, 자칫 남의 땅을 확인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일 집을 지을것을 대비해 전망, 조망 등을 확인하고, 위협요인(토사, 붕괴, 함몰)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11) 지적공부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

대규모 주택 터 마련은 담당공무원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같은 경우, 상수도 / 하수도 문제는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개발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 하수도 문제는 학교시설 분담금, 기부채납, 도시가스 인입비, 지역개발공채 등의 분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의 하세요.

각종 영향 평가(교통, 환경, 재해, 지하수, 경관) 등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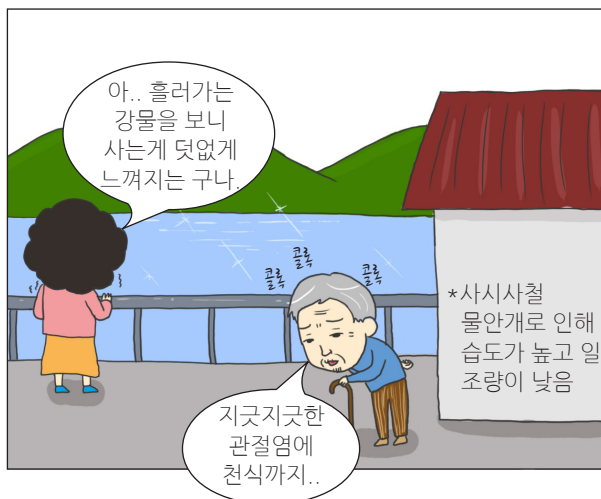
3. 피해야 하는 집터

1)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



2) 호수, 저수지, 강, 계곡

이 지역들은 토지가격이 높은 관계로 수요가 많아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니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매립지,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

매립지의 경우 지반 침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립 후 2-3년 내 건축일 경우, 지반 침하가 있을 수 있으니 매립한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4)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는 부지

혐오, 기치시설 주위의 부지는 건축 후 부가가치를 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산 뒤편, 마을 구석 등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1/10000 전국지도 등을 보고 현장을 확인 하세요.

① 공동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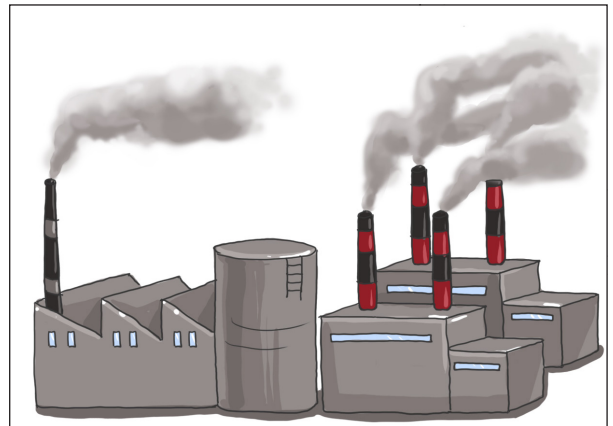
② 화장터



③ 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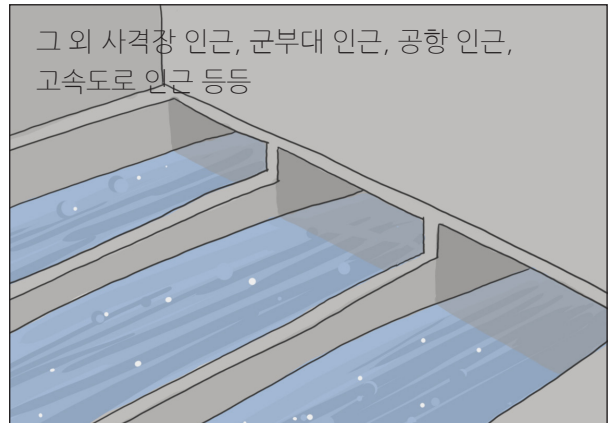
④ 염색/가죽/시멘트 공장



⑤ 쓰레기 매립장



⑥ 하수종말처리장



5)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



농지를 집터로 만들기

보통 귀농, 귀촌을 위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나 전용이 용이한 농림지역을 사서 전용 후 주택을 짓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여야 하기 때문에 '임야'나 '전' /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농지전용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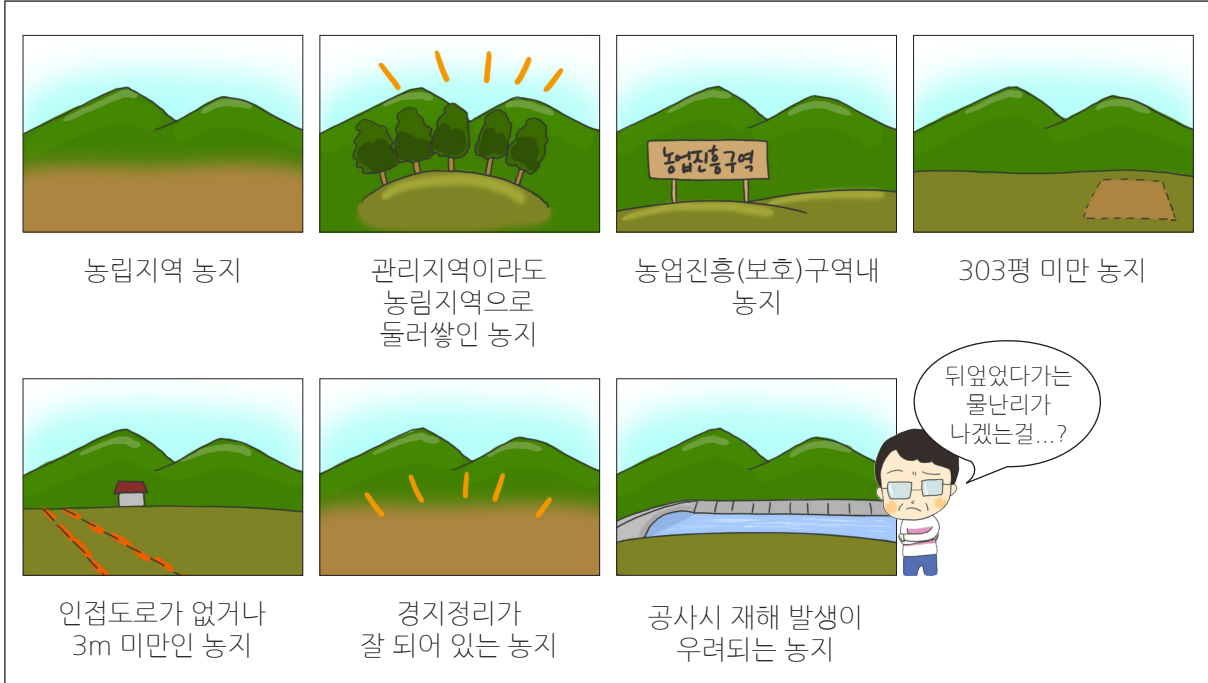


1.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p>1)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조달방법), 시설물 관리 / 운영 계획, 사업장 규모</p>	<p>2) 피해방지 계획서 ex) 대체시설 설치계획(도로파손, 변경시) 토사유출 방지계획(토사유출 우려시) 정화시설 설치계획(폐수, 약취 발생시)</p>
---	---

*지적도(1/5,000)와 지형도(1/25,000)에 전용 구역과 폐지/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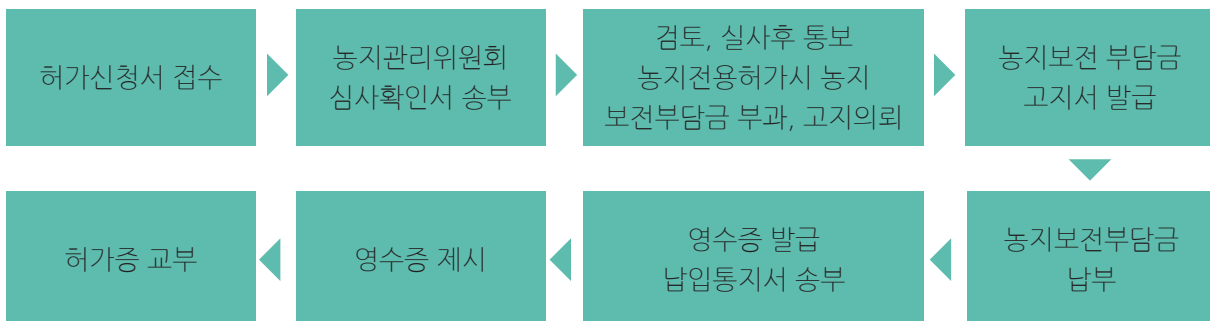
2. 전용 허가 / 신고가 어려운 농지



3. 농지보전 부담금

- 1) 1㎡/당 공시지가의 30% 해당하는 금액(전용면적 × 공시지가 × 0.3 = 부담금)
- 2) 1㎡/당 공시지가의 30% 산출액이 5만원 초과시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함

4. 농지전용 허가 절차



산지를 집터로 만들기

*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1. 산지전용허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산지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림지역'인 경우 전용불가. 농업/임업인의 농가 주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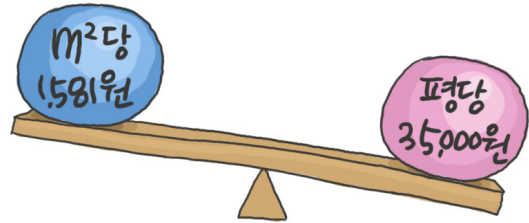
산지는 농지보다 구입 개발 비용이 적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산지 구매시 주의점

<p>확인 필수</p>	<p>이건 도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p> <p>원래 산지란게 구분이 모호해요</p>	<p>으~ 이 개천은 지적도에 없었는데!!</p>
<p>반드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부 확인</p>	<p>현황도로 접촉여부 확인 반드시 인·허가 관련 측량 사무실이나 해당 자치단체 담당 직원에게 확인</p>	<p>부대적인 허가사항 확인</p>
<p>음.. 미리 답사 오길 잘했군..</p>	<p>~뽁뽁함~</p>	<p>합계 3만㎡초과</p>
<p>경사도 확인 산지법상 25도 이상의 경사일 경우 전용이 불가능함</p>	<p>임목 확인 산림이 산지 면적당 100% 이상일 경우 허가 불가. 지역별로 적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p>	<p>기존 산지전용 허가지역의 경계와 500m이내에서 허가 신청시 총면적 합계가 3만㎡를 넘으면 개발 금지</p>

3. 전용허가에 드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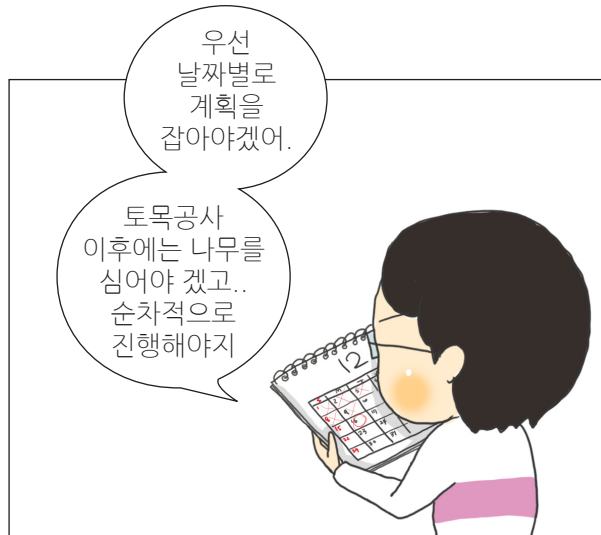
- * 우선 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맡길 때 드는 비용
300평 기준으로 350-400만원(추가시 평당 4천원 안팎)
반드시 표준 용역 계약서를 작성 해야함
- * 전용허가증 수령시 대체조림비(㎡당 1,581원) 및
면허세등의 자갈한 비용이 들지만 부담될 정도는 아님
- * 대체조림비는 농지조성비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



4. 까다로운 준공절차

주택건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준공절차를 밟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대체조림비는 환불)

산림준공 및 건축준공 모두를 득하였을 경우만 토지분할,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이뤄지므로 주의하세요. 적지복구 설계(파헤친 산림 복구계획)에 대한 승인도 토목공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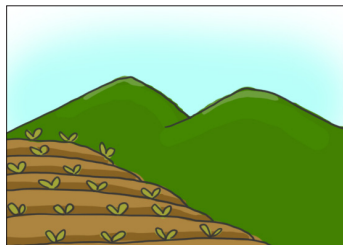


5. 귀농을 위해 산지를 구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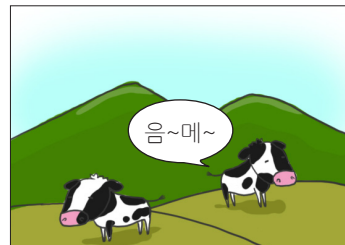
1) 아래의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농업, 임업 종사자가 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농·임업 기계 보관실, 농로 등을 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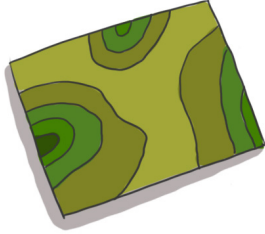


1만㎡ 미만,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벌채없이 산지전용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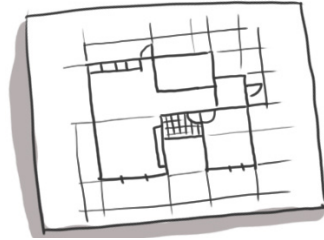


조림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병목하는 경우

2) 신고시 구비서류



훼손 / 실측 구역도
(1:6,000 / 1:3,000)



설계도서



임야소유권,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지금까지
소개한 절차를
검토한 이후더라도

각 자치단체의 기준,
여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다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토지전문가나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10계명

1. 가족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영농을 잘하는 데에는 기술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4. 소득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
5. 도시와 달리 불편할 수도 있다.
6. 처음부터 시설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
7. 정착 지역의 주민과 빨리 동화되도록 노력하라.
8.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확보하라.
9. 자신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라.
10. 농업도 직업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귀농·귀촌
길라잡이



배우자 동의 없는 귀농은 반드시 실패한다

귀농하는 이들을 만나 보면 부부 중 남자들의 의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남자들의 귀소본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 가족의 생계를 주로 남자들이 지고 있다가 농업으로 직업 전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는 수동적이 되는지 모르겠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부부가 농촌으로 이주할 때, 남편보다는 아내 쪽이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이나 쇼핑, 문화생활, 의료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중시하는 쪽이 여성이라서 더 그러할 것이다.

한편 남자들은 일단 귀농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나서는 걱정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나중에 결국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승부사처럼 밀어붙이는 경향도 많아 보인다. 무작정 시골집이나 농지를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귀농 관련한 인터넷이나 자료나 책자를 수북이 쌓아놓고 파묻혀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고향으로 간다고 하면 흔히 남편의 고향을 의미하듯이, 아내는 귀농에 대해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귀농은 배우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무작정 밀어붙일수록 상대방은 귀농에 대해 더욱 마음을 닫아버려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옥천 금천계곡

1

귀농준비로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는 것은 피하라.

흔히들 귀농하려거든 주말농장이라도 해 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야말로 현업에서 은퇴한 60~70대에게는 권장사항이지만, 아직 현업을 가지고 있는 40~50대는 피해야 할 일이다.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삽이나 괭이는 물론이고 관리기나 경운기, 분무기 같은 여러 가지 농기구나 비료, 퇴비 등등의 농자재가 필요하고, 매일 돌봐주어야 한다.

20·30평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관리기나 경운기가 없어서 부부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삽으로 일구고 괭이로 흙덩이를 부순다면, 이미 그 단계에서 몸져눕고 스스로 지쳐버릴 것이다.

그나마도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농부들과 달리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수일 전, 비라도 내려서 땅이 말라있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못하고 결국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쳐 버리게 된다. 마을의 농가에 부탁해서 쟁기질이나 로터리 작업을 맡길 수도 있

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날씨가 한참 더워지는 6~8월 동안은 잡초의 생육이 무성한 시기인데, 부부가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저녁에는 손아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를 뽑고 돌아왔지만, 다음 주에 가 보면 작물의 키를 덮을 정도로 자라난 잡초에 두 손을 들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귀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두 손을 들고 말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정도로 두 손들 거라면 귀농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라톤을 맨발로 뛰어보라고 한 다음, 도중에 기권했으니 더 이상은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부른 주말농장 운영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옥천 벚꽃 자전거 여행

2

농촌생활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라

흔히들 농업 하면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 무언가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것이 도시에서보다 소득은 크게 줄고 생활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농촌생활은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가치를 찾아서 귀농하는 것이 아닌가? 가끔씩 그러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여행을 떠나는 것도 배우자의 마음을 열고 귀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청으로 귀농한 이태희 씨 부부는 유정란을 생산하여 도시의 지인들과 회원들에게 택배 판매를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회원이 더 늘어나고 주문이 몰려 와도 더는 농장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거나 허리 한번 펴 수 없을 정도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함께 그동안 살아온, 또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인생을 굽어보는 생활

을 도시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귀농은 육체적으로는 도시에서보다 어찌면 더 힘들지만, 이처럼 생활의 여유로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귀농은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배우자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농업과 농촌을 바라볼 기회를 가지면서 서로 공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옥천군 정지용시인 생가

3

농업으로 돈 버는 현장을 찾아가 보자

귀농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경제적 소득일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0~40대에 귀농하면, 30~40년간은 농업에서 경제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006년 전국 우수농업경영체 2,027곳을 조사하여 총 263곳의 농업경영체를 선발하여 11권의 농업경영혁신 시리즈(www.lfcenter.com)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어 보던 중, 궁금증이 발생하여 그중에서 귀농자 출신을 세어보았더니 98명으로 전체의 37.26%에 이르렀다. 스스로 귀농자 출신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농업경영을 혁신적으로 잘했다고 정부에서 사례로 삼은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귀농자 출신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들의 평균 귀농 기간은 14.75년이었다.

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대외적인 시장개방과 안전성, 규격화, 고품질,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추구 등 대내적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도시민 출신 귀농인들이 보다 대응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땅만 바라보고 농사짓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고 농업 하는’ 능력이나 여건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중에는 기존의 농업인들은 시장 환경이 바뀌는 것을 알더라도 이미 형성된 기반을 어찌할 수가 없는 데 반해, 귀농인들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다는 이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귀농해서 산업적으로 성공한 농업인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경제적 소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4

비닐하우스에서 땀으로 속옷을 적셔보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품브랜드의 옷이라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입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모내기나 고추 수확도 체험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곁가지로 따보거나 농가주택에서 숙식도 해가면서 농촌생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린 뒤에 적셔오는 마음의 청량제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막연하게 동경했던 대로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원에서 부부가 팔베개하고 누워, 석양의 지는 해를 바라보는 농촌만 있는 것인지, 감기몸살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는 날도 무더운 비닐하우스에서 10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서 상추를 수확하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여 가꿔온 상추가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기는커녕 돈 주고 사람

을 동원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어떤 형태의 귀농을 해 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설픈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는 것보다는,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을 해 보는 것이 귀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작목과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귀농은 단순 이사가 아닌 사회적 이민

도시민의 귀농은 사회적 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방식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사회로의 이동이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나 음식, 생활방식, 매너와 예절 등을 사전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준비했는가에 따라 마음고생을 덜 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덜 지급하고 정착할 수 있다.

농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농업이라는 특성상 일정 부분 공동체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농사일을 크게 벌리고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일해 주려 안 오면 애써 농사지은 것들을 제대로 수확도 못 하고 꿈쩍없이 손을 놓아버려야 한다. 도시에서처럼 인건비를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 마을의 임금만 올려놓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만다. 농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귀농은 실패로 끝나 버릴 수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고추농사 짓는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서 실패한 귀농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귀농해서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 대부분은 지역사회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

농촌은 지불방식이 다르다

어느 귀농인이 찾아와서 ‘교수님! 농촌은 21세기의 보편타당적인 가치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라고 하소연하길래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내 돈 주고 집 짓고 땅 사서 농사짓는데 동네 무슨 일만 있으면 술이라도 한 말 안 내놓나 하는 압박을 가해온다는 얘기였다.

도시적 잣대로 본다면 이해 안 되는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집 짓고 땅을 샀더라도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나, 잘 정비된 하천, 농지로 가는 농로, 심지어 그 지역의 초등학교까지도 알고 보면, 그 마을 사람이나 선조들이 기부하거나 힘을 보태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은 그러한 공간에 무임승차하는 꼴이다.

도시에서는 개나리아파트에서 목련아파트로 이사 갈 때 부동산에서 소개비를 내면 그만이지만, 농촌으로 이주할 때는 지급방식이 도시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어차피 본인이 장에 불일이 있어 갈 때,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에 가는 마을 어르신을 태워다 드리고, 품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주변 농가가 일손이 부족할 때는 팔 걷어붙이고 고추도 따고, 감자도 캐는 일은 물론, 상갓집에도 얼굴을 내미는 등 동네의 굶은일에도 나서야 한다. 이러한 것이 도시와는 다른 농촌사회에 진입하는 지급방식인 것이다.

2

겸손하라! 하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지는 마라

보통은 귀농 지역을 결정하고 집이나 땅을 알아보러 해당 지역의 몇 개 마을을 주말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다니게 된다. 이때, 마을 입구의 가게 앞 마루에 동네 어르신이 앉아 있는 곳을 자동차로 훑훑 지나다니기만 했다고 치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들여다보는 것이 마을사회다. 마을 사람들에게 협조는커녕, 나중에 이사를 와도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차에서 내려 소주와 안주를 사 드린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자리에 앉아서 있는 소주라도 따라 드리면서 아는 것도 물어보고, 무슨 농사짓는지 여쭙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녔거나, 학벌이 좋더라도 농촌에서는 초보자일 뿐이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줄 것도 안 주고 당연한 것도 비틀어 받을 수가 있다. 겸손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 시간이 지나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는 사람 취급당하기에 십상이다. 사사건건 따지고 들어서야 안 되지만, 처음부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겸손한 것과의 경계선을 잘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어렵지만 꼭 명심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3

이웃을 사돈처럼 대하라

대부분 귀농인은 마을 사람들과 친해 보려고 집으로 식사도 초대하고,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도 보는 애를 쓰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귀농 초기에는 이웃을 대하기를 사돈처럼 대할 필요가 있다. 사돈 기간에는 서로 예절도 지키며 깍듯하게 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마음을 탁 터놓고 있는 그대로를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멀지도 않은 사돈 같은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마을의 생태계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천천히 보여주고 주변 사람도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서로 심하게 다투더라도 다음날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서로 어울리고 품앗이도 나누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들만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굳이 해석하자면 같이 어울려 농사일해야 하는 농경문화의 특성이라고나 할까. 농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농사일은 내가 아무리 마력이 큰 트랙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웃에게 삼태기라도 빌릴 때가 있는 법이다.

어차피 느리게 살자고 귀농하는 것이 아닌가. 서두르지 말고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4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나 단체를 찾아내라

귀농교육과장 1기 수료생인 김한중 씨와 현창호 씨는 충남 연기에서 조경수 묘목을 재배하기로 했다. 조경수 묘목분야는 일반농산물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비교적 높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조경을 위한 나무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반 농산물에 비교하여 까다로운 재배 기술 습득이 문제였다. 오이나 호박과 같은 일반 농산물은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묘목은 개인의 가진 경험과 노하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귀농지원센터의 소개로 연기군의 조경수생산 영농조합 회장과 총무를 각각 멘토로 삼고 귀농정착을 시도한 결과, 기술습득은 물론이고 농지임대나 묘목 판매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이제는 본인들의 힘으로 농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들의 경우는 지역의 선도 농업인과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귀농인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역의 귀농인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초기 정착 시의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작목 선택이나 재배방법, 초기 투자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농지를 선택할 때는 한눈에 반하지 마라

한눈에 반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지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연애도 그렇지 아니한가? 필자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만 금수강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외국을 다녀보니까 세계도처에 금수강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카메라만 갖다 대면 달려 사진이 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귀농지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날 때는 선택권이 없었고 자라서는 대학이나 직장에 맞춰서 옮겨 살았다면, 귀농지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평생을 뿌리내리고 살 곳이니만큼 발품을 들여 전국을 다녀봐야 한다.



1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으면 농사지를 땅은 없는 셈이다

많은 귀농인이 찾고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편에는 큰 산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산 중턱에 운무가 걸려있고 가는 곳마다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농사지를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행락철이나 휴가철 또는 명절도 아닌데 휴일이면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는 이유는, 도시에 있는 자식 며느리들이 부모를 찾아뵙는 행렬이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골의 땅값이 많이 올라 귀농하기가 힘들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를 잡고 그 주변의 비싼 농지를 사거나 임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도시와 별반 다를 바도 없이 읍내에 집을 구하거나 별판 한가운데 집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다. 발품을 많이 팔다 보면,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터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반드시 고려할 것은 경작할 농지나 접근성 등 농업 경영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귀농지 선택은 사계절을 경험한 뒤에 판단하라

어떤 귀농인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상에 반해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은 지역을 정해놓고 나서 정착할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지역을 그렇게라도 결정하고 보니, 전국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비교적 고민을 덜 하고 귀농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화장실이나 주방을 수세식이나 입식으로 수리하고 농지도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도 짓고 어지간한 농기계도 구매하여 외견상으로 귀농 첫해에 어엿한 농업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을 지내고 나서는, 한여름의 시원함과 가을의 절경 다음에 찾아오는 추위와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눈 세레 속에 넋더리가 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은데 이제는 옮길 수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다.

몇 해 전 공무원을 하는 지인이 1년간 하와이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귀국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여행도 어려운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1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냐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나 가족들은 빨래를 못 말릴 정도의 모래바람과 끈적끈적한 바닷바람, 강한 햇살에 넋더리를 냈다고 한다.

이처럼 여행이나 TV를 보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 게다가 농업생산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귀농의 경우는, 사계절을 경험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3

또가리 땅보다는 어렵더라도 덩어리 땅을 구하라

귀농해서 어려운 것이 농지를 빌리는 것이다. 마을 사람끼리는 농지를 빌려주고 받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귀농인에게는 좀처럼 농지를 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불리 귀농인에게 땅을 빌려주었다가 잡초투성이가 되거나 병충해로 보기 흉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면 단위 내에서는 2~3명만 같이 있어도 그중에 누군가는 저 논이나 밭이 누구네 땅인지를 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 귀농인이 농지를 빌리자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농지를 빌리게 되는데, 한군데에 2천 평, 3천 평의 농지를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보니 200평, 300평 정도의 농지를 여러 군데 빌리게 되는데, 일 년 농사를 짓고 나서 보면, 어떤 곳은 자갈이 많고 척박하거나 가물고 물

도 없거나, 심지어는 트랙터는커녕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곳이어서 퇴비를 낸다든지 수확을 할 때, 일일이 지게로 날라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봄철이나 여름철에 한창 일을 할 때는 노임을 주고 품을 얻어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을 시키기는커녕, 이 밭 저 밭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나르다가 해가 저물어 버릴 수가 있다.

필자도 예전에 잠시 귀농을 했을 때, 멀리 떨어진 두 군데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했는데 농약 분무기나 호스 등을 자동차 트렁크나 지붕에 얹고 우왕좌왕하던 때가 생각난다. 시간이 걸리거나 임대료가 더 들더라도 덩어리 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천 37번 국도

4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농촌 지역을 다니다, 외딴곳에 새로 지은 집은 십중팔구 귀농인의 집으로 보면 된다. 물론 마을 내에 마땅한 빈터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마을 근처 정도가 아니고,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 홀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진입로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 전화는 내 돈으로 끌어야 한다. 200m는 한전에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자부담이다. m당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니까 거리에 따라서는 1~2천만 원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전화는 별도로 전봇대를 세워야 한다. 전기용과 전화용 전봇대가 별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절망하게 되어 버린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전화가 되는 것은 지리산에서도 터진다는 휴대전화 회사의 전략이라는 것을 쉽지 않게 알게 된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관정을 파면 7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농번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자신의 차로 태우고 오고 태워다 줘야 한다. 우편물은 몰라도 택배는 마을 이장 댁까지만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택배로 직거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예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 학교는 물론이고, 어쩌다 교육이나 모임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라도 가게 된다면, 가족들을 산속에 두고 떠나야 한다.



귀농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창업의 길

귀농은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 생활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농업은 매달 수입이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초기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많은 귀농인들은 3년간 수입 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3년간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3년 후에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다. 비닐하우스나 경운기 같은 시설이나 농기계 등에 그동안 투자를 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귀농지 선정이나 농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충전, 영농계획 수립, 가족과의 공감대 형성 등 3년은 준비하고, 귀농해서도 별다른 수입 없이 3년간은 경제적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30~40대의 귀농은 창업이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정적인 농외수입을 마련하라

귀농해서 매월 농외수입으로 5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매월 50만 원씩 3년, 그러니까 1,800만 원을 더 가지고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매월 50만 원씩 농사일 말고 별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건물임대 수입이든 예금수입이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받아서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서 말의 구슬을 가져다 꿰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귀농 초기에는 허둥댈 뿐이지 365일 내내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의 밤은 길다.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분간은 혼자 내려와서 정착준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야 쫓기지 않는다.

2

지역농산업 시스템에 편입하라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지원한 유기농 쌀 도정공장(RPC)에서 쌀을 짚을 수 있고 벧짚이나 쌀겨 등의 부산물은 지역 내 유기축산 농가에 더욱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유기퇴비가 필요한데, 지역 내의 유기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한시름을 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위해, 아산시를 ‘자원순환형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하고 60억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인근 시군에는 이러한 시설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 경계선을 사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옆의 예산군은 사과산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를 압도한다.

우리 농업은 이미 지난 정부 시절부터 <평균적 균등지원>에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농정 방향이 바뀌어 오고 있다. 지역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력분야의 집중 육성인 셈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영농분야에 지역을 맞추든지 정해진 지역의 주력품목을 선택하는 등 지역산업 시스템에 편입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육영수 생가

3

농업도 산업이다 도전하는 분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라

흔히 농촌 출신이 도시 출신자보다 귀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농촌 출신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귀농하는 U턴형 귀농보다는,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I턴 귀농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U턴형 귀농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어깨너머로 보거나 거들어왔고 경운기 운전도 할 수는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준비 없이 귀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턴형 귀농자는 경운기 운전은커녕, 고추를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것인지 모종을 심는 것인지 아는 것이 없다. 후자는 구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준비하고 귀농하는 것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경운기 운전이 아니라, 트랙터 운전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을 거머쥘 실력을 가진 프로농업인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지금의 농업이다.

기존의 농업인 중에도 20년 수박농사 지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20년 지은 농민이 허다하다. 20년 수박농사 지은 사람이라면 해당 분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20년간 진화해온 경우가 해당 된다. 귀농인도 농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농가들의 경험을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해서는 20년간 다람쥐 쳇바퀴만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다행히 정보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맞춤형 귀농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농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선도 농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참여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4

어떻게 팔 것인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팔 것인지부터 생각하라

농민들은 흔히 <가격은 둘째 치고> 판로만 있다면 농사일은 할 만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판매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기존의 농민들은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어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를 하거나, 일정규모를 생산하는 농가는 직접 가락동 시장 등에 내다 팔 수가 있다.

하지만 귀농 초기에는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취하거나, 규모가 작으므로 작목반 가입은 물론 가락동 시장 등에 출하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럴때 직거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도시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내게 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인이 있길래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 팔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심지어는 친하게 지내던 도시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사과를 한 상자 팔았다고 치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뜨거운 여름날 내내 예취기를 동원해 풀을 깎으면서 쏟아낸 땀방울의 절반도 상상하지

못하는 직장동료가 던지는 ‘사과 크기가 왜 이리 들쭉날쭉해!’라는 한 마디에 다시는 아는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하게 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면이 없는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를 넓혀야 한다. 그러자면 품질이 좋아야 하고 농산물 그 자체의 뭔가 남다른 ‘가치’를 붙여야 한다. 그냥 벌꿀이 아니고 ‘꿀벌 두 마리가 평생 모은 꿀’, ‘단단한 홍시’, ‘즉석 도정 쌀’ 등 토지와 노동력, 자본의 크기로 밀어내는 총량적 생산량 증가 개념의 농업이 아니고, 정보, 아이디어, 서비스를 결합하는 가치창조형 끌어 당기기식 농업을 통해 차별화를 이뤄내야 한다. ‘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팔 것이 없는 것이다’ 팔 것을 차별화해서 만들어 낸다면 판매경로는 무궁무진하다.



왜 귀농하려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세워라

귀농은 단순히 셉러리맨에서 농부로 직업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모두의 살아가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이다. 어쩌면 삶의 철학도 바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귀농은 가족들이 농촌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다.

만약 귀농으로 때론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들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물론 상당한 경제적 기반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타 사업 분야보다 도전해볼 만한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생활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지휘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겠다고 하는 삶의 좌표이전형 귀농은 비교적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귀농이 실패하는 것이다.

지금 왜 귀농하려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귀농준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민원 사무
길라잡이

여권발급 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종합민원과	730-3125	즉시	20,000원 53,000원

□ 개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문의 일종
-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음
- 근거법령
 - 여권법 제2조(여권의 소지)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3.5cm × 4.5cm)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나. 신청방법

- 여권발급 신청자가 여권(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담당부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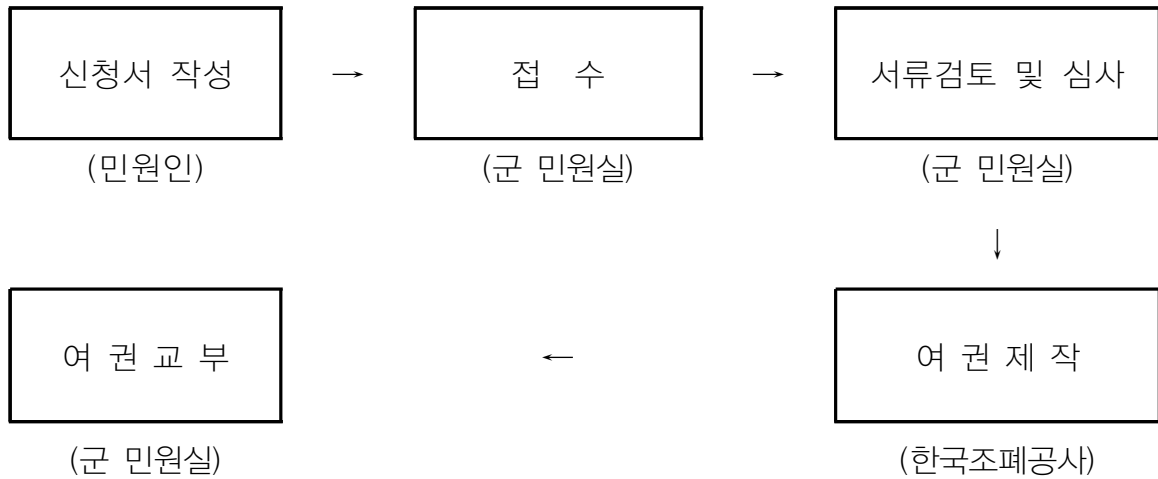
다. 수수료

구 분	합 계	영수필증	국제교류기금	납부방법	비고(원)
단수(1년)	20,000	15,000	5,000	카드·현금	
복수(5년)	45,000	33,000	12,000	카드·현금	만18세이하
복수(10년)	53,000	38,000	15,000	카드·현금	
기간연장	25,000	25,000	0	카드·현금	

□ 여권발급 신청

- 일 반 인 :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신청
- 미성년자 : 18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 군 인 등 : 국외여행허가서등 병역관계서류 지참
- 신 청 서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볼펜으로 본인 자필작성
- 기타사항 : 2010.1.1부터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 강화

□ 업무흐름도



※ 참고사항

- 여권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 7일 소요
- 여권발급 문자서비스 시행

토지(임야) 합병 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종합민원과	730-3142	5일	1필지 1,000원

□ 개요

- 토지(임야)소유자가 토지(임야)를 합병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령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지이동신청서 1부

나.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부서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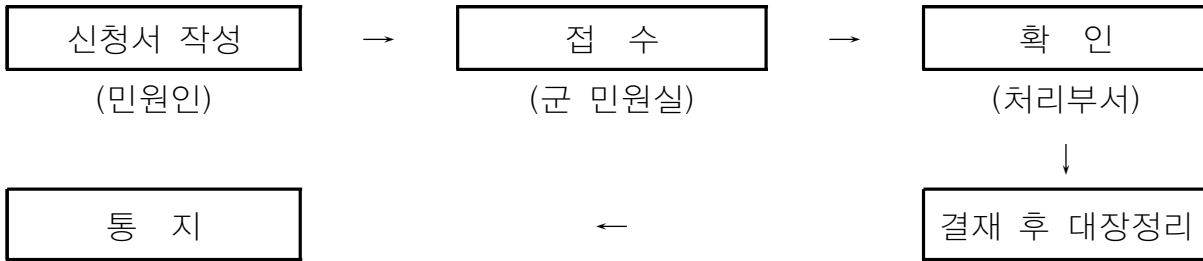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납부방법	비고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군수입증지	

□ 심사기준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축척이 동일한가,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가 안 된 토지와의 합병은 아닌지, 구획정리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아닌지 및 현지의 이용 상황을 확인 검토

□ 업무흐름도



※ 참고사항 (촉탁등기)

- 토지(임야)대장정리 후 등기관청에 합병에 관한 등기를 필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
(처리기간 약 20일 소요)

토지(임야) 분할 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종합민원과	730-3142	3일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개요

- 토지(임야)소유자가 토지(임야)를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측량결과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는 민원
- 근거법령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규칙제83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지(임야)분할신청서 1부.
- 분할허가 대상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정보이나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분할을 수반하는 경우
 - 인·허가서 사본 또는 준공검사필증 사본

나.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후 담당부서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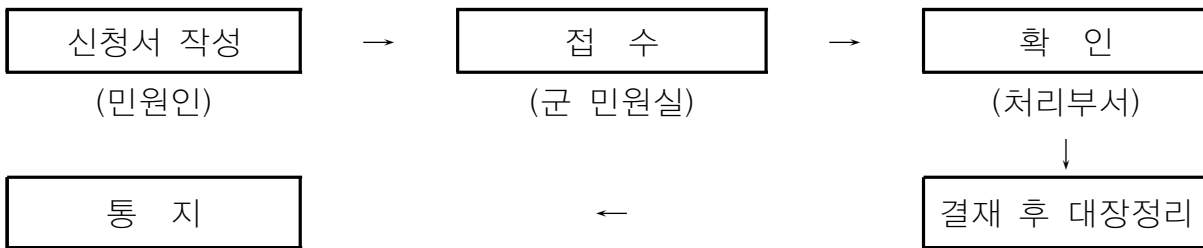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납부방법	비고
수수료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군수입증지	

□ 심사기준

- 측량성과의 정확성확인과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허가여부를 확인 검토

□ 업무흐름도



※ 참고사항 (촉탁등기)

- 토지(임야)대장정리 후 등기관청에 분할에 관한 등기를 필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 (처리기간 약 20일 소요)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종합민원과	730-3142	5일	1필지당 1,000원

□ 개요

- 토지(임야)소유자가 토지(임야)의 지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령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규칙 제84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 후 지목변경 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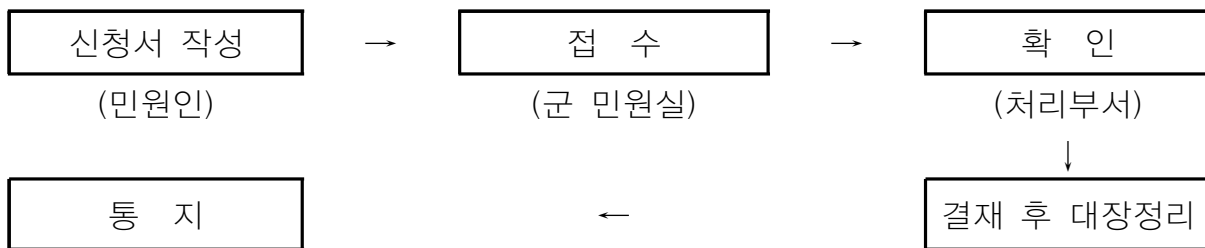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납부방법	비고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군수입증지	

□ 심사기준

-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및 현지의 이용 상황을 확인 검토

□ 업무흐름도



※ 참고사항 (촉탁등기)

- 토지(임야)대장정리 후 등기관청에 분할에 관한 등기를 필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 (처리기간 약 20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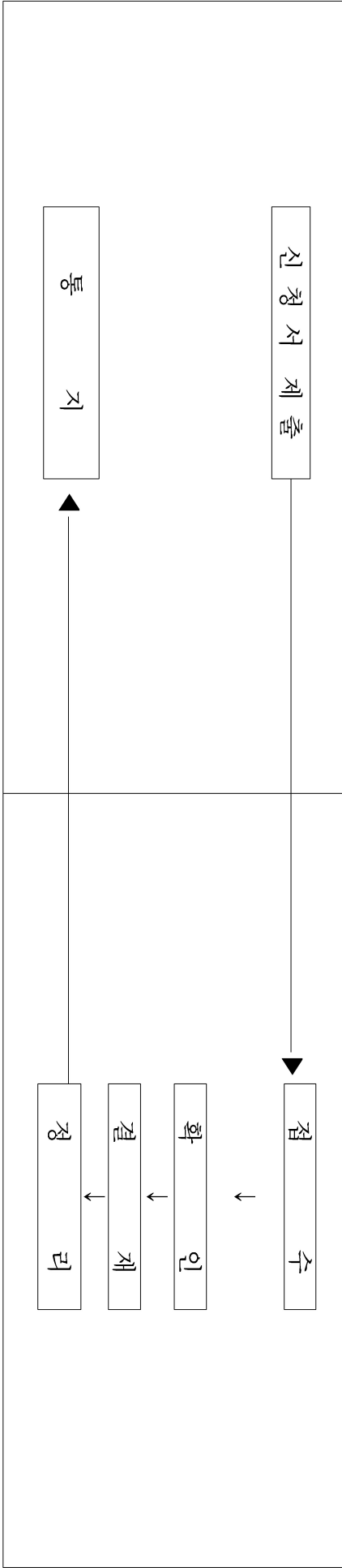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분할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지목변경 <input type="checkbox"/> 등목전환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합병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등록 사항정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서	처리기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뒤쪽참조
	주소										전화번호		
토지 소개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	토지의 이동사유				
시·군·구·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결의일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수입증지첨부관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뒤쪽 참조)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등록: 3일 ○ 토지 (임야)지목변경: 5일 ○ 토지 (임야) 합병: 5일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임야) 분할: 3일 ○ 등록 전 환: 3일 ○ 등록 사항 정정: 3일 ○ 축척 변경: 3일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임야) 신규등록: 1,400원(1필지) ○ 토지 (임야) 지목변경: 1,000원(1필지) ○ 토지 (임야) 합병: 1,000원(합병 전 1필지)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무료 ○ 토지 (임야) 분할: 1,400원(분할 후 1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전 환: 1,400원(1필지) ○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400원(1필지) ○ 등록 사항 정정: 무료 ○ 축척 변경: 1,400원(1필지)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종합민원과	730-3155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없음

□ 개요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동일인이 여러 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신청토지, 신청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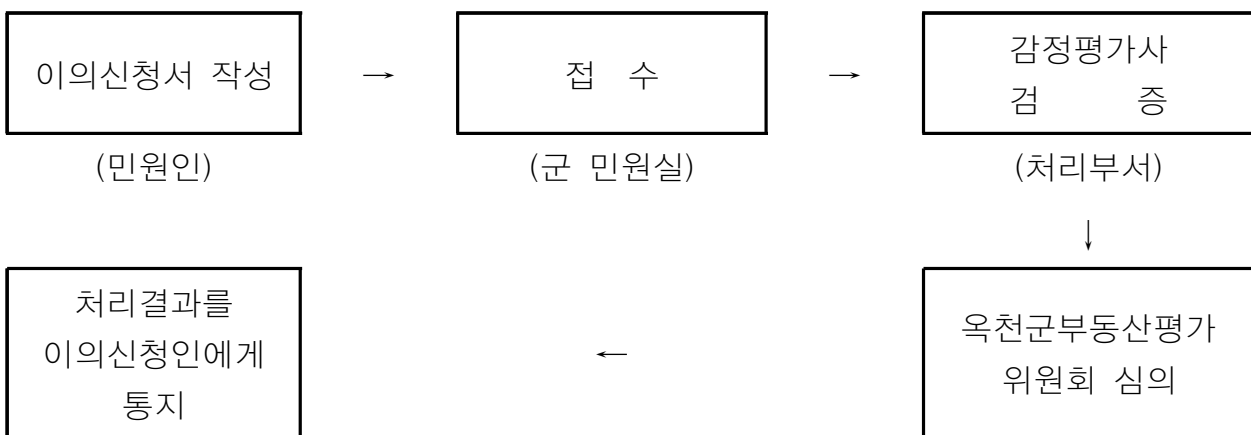
나. 신청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심사기준

-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가 충실히 검토·확인 함.

□ 업무흐름도



※ 기타 참고사항

- 본민원 행정처분에 불복(이의신청)이 있으실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옥천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옥천군수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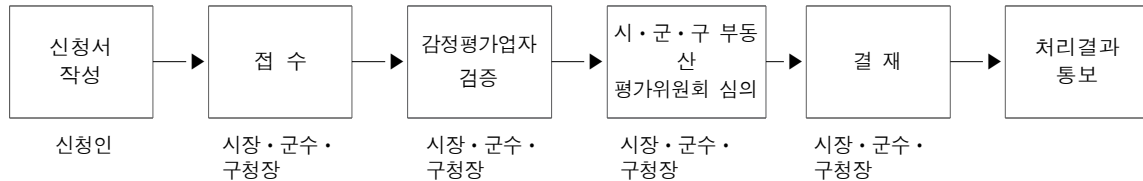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진 정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공통분야		7일	없음

□ 진정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줄 경우 제출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진정서 1부(원본) ※ 다수인 연명의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 근거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접수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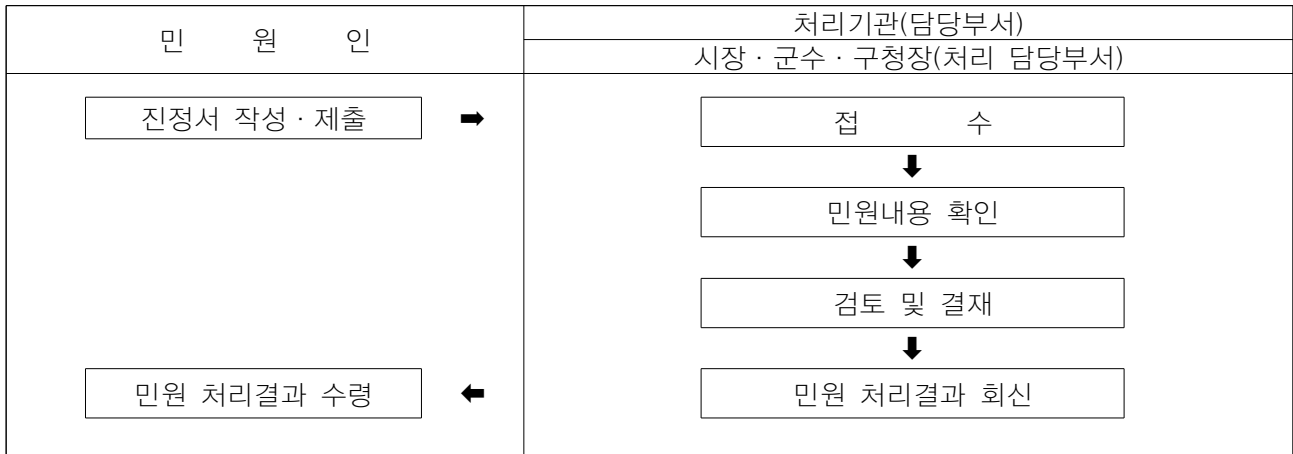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진정내용이 여러 부서와 연관될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 협의 처리
-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청인 성명, 주소 등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항

□ 업무흐름도



4. 기타사항

- 거부요건 : 법령 및 규정상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대안 등을 명시하여 통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소)

※ 진정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바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한다.

건의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공통분야		14일	없음

■ 건의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건의서 1부(원본) ※ 다수인 연명의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 근거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접수일로부터 14일
- 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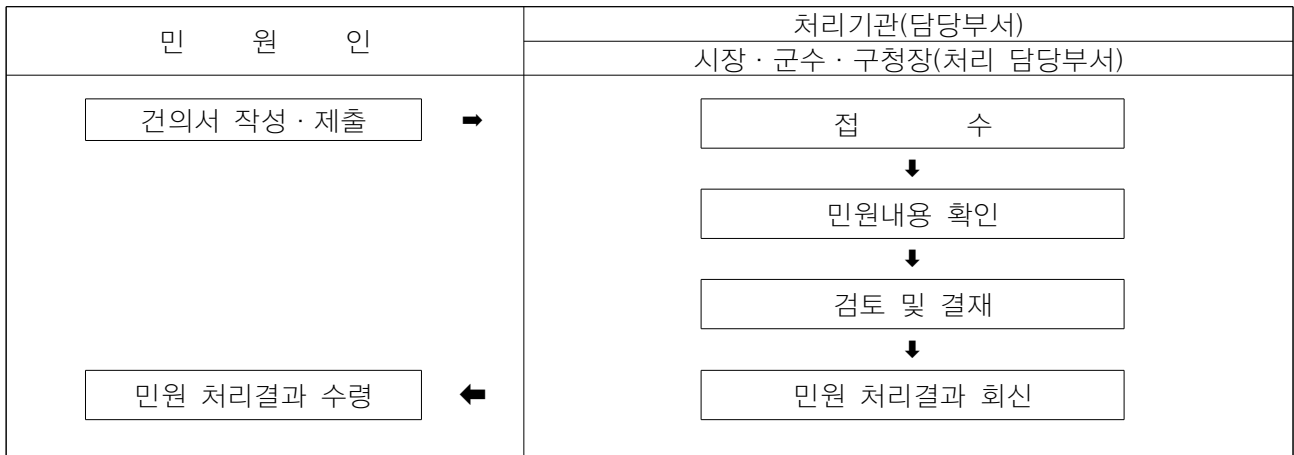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의내용이 여러 부서와 연관될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 협의 처리
-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청인 성명, 주소 등

■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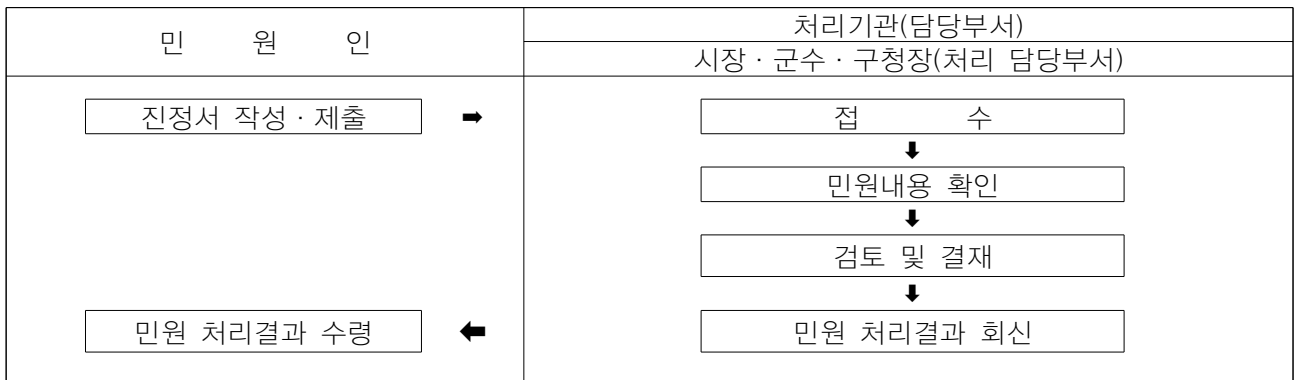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항

□ 업무흐름도



4. 기타사항

- 거부요건 : 법령 및 규정상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대안 등을 명시하여 통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소)



4. 기타사항

- 거부요건 : 법령 및 규정상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대안 등을 명시하여 통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소)

농지전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친환경 농축산과	730-3242	시군	10일	농지법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시도	20일	
		농식품부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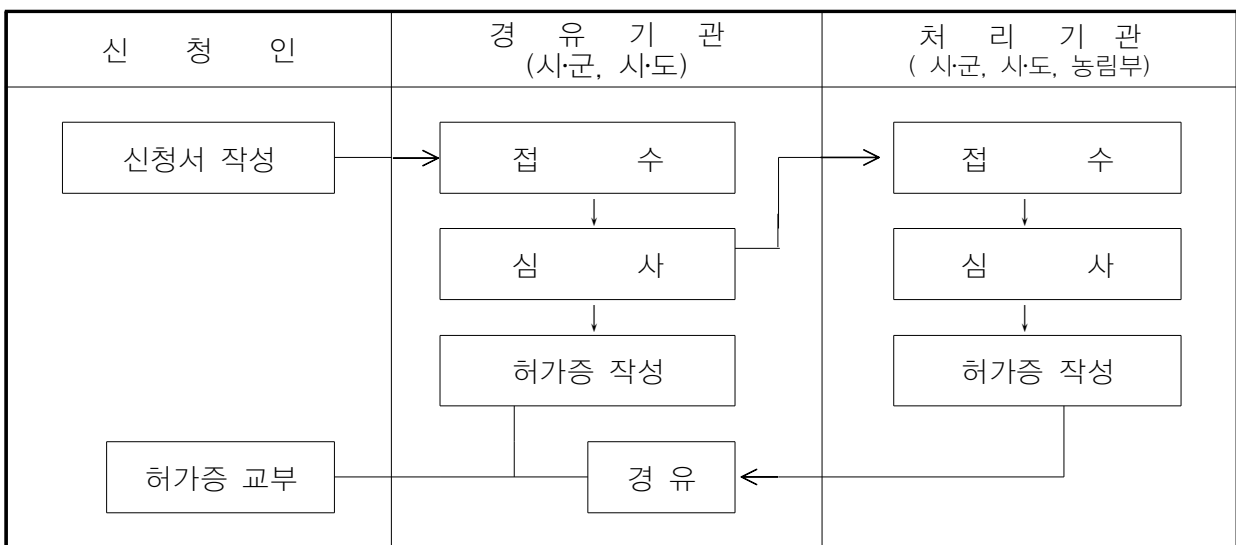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3. 유의(참고)사항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용도구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2. 농지전용의 적정성
3.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4.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5.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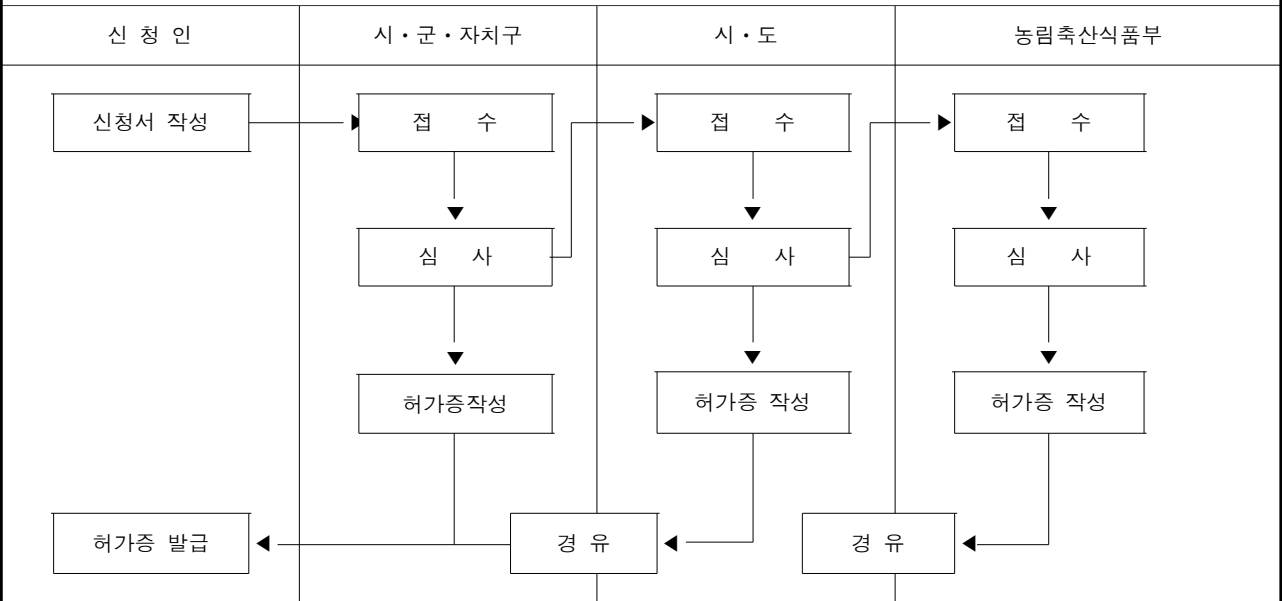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타용도일시 사용허가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친환경 농축산과	730-3242	10일	농지법시행령 제74조에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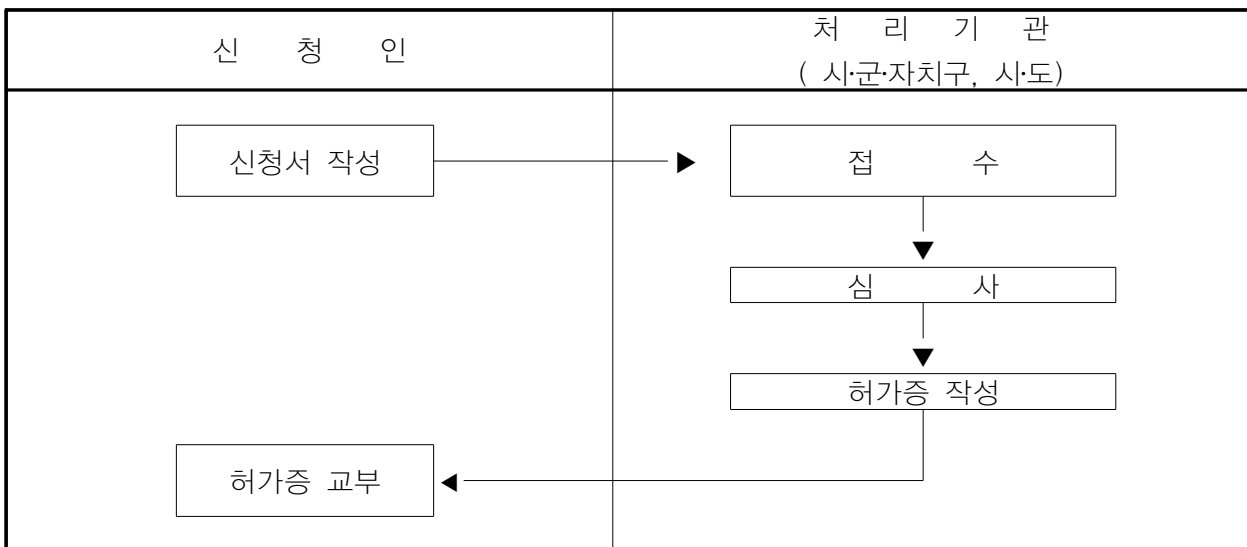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복구비용예치
3. 유의(참고)사항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면적, 사용기간 적정여부
3.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 보전가치 여부
4. 농어촌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하게 수립여부 검토

□ 업무흐름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p>「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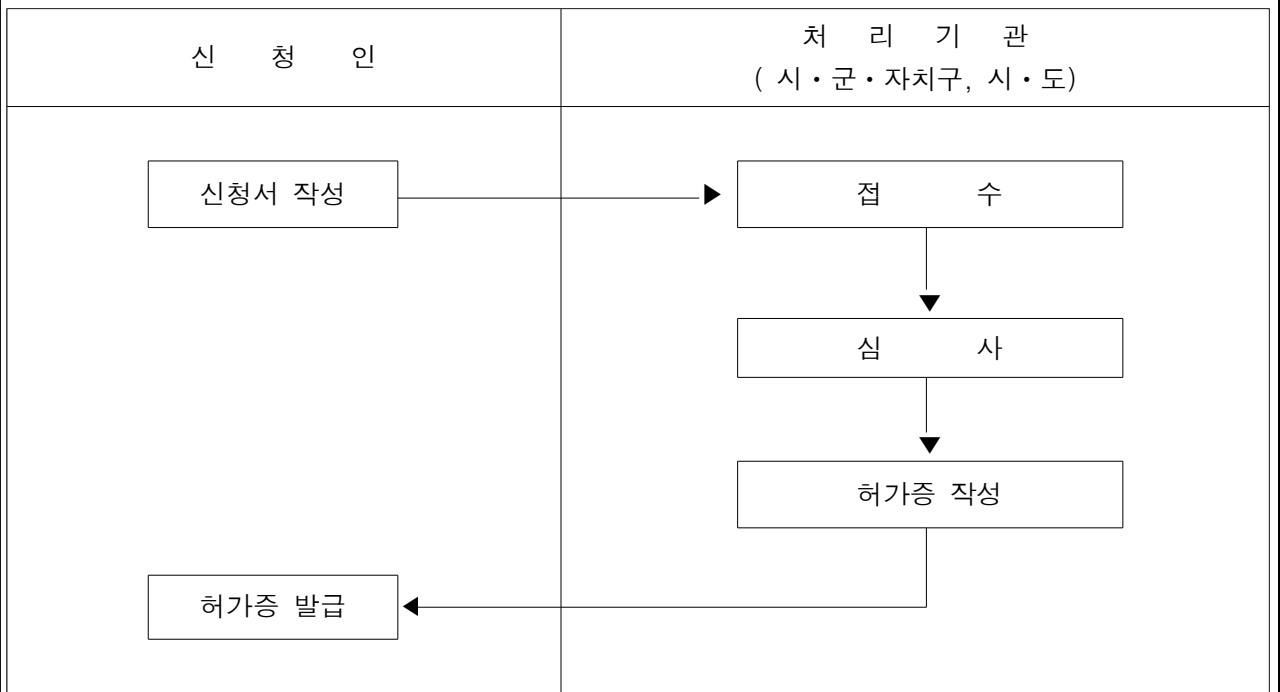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친환경 농축산과	730-3242	17일	농지법시행령 제74조규정 에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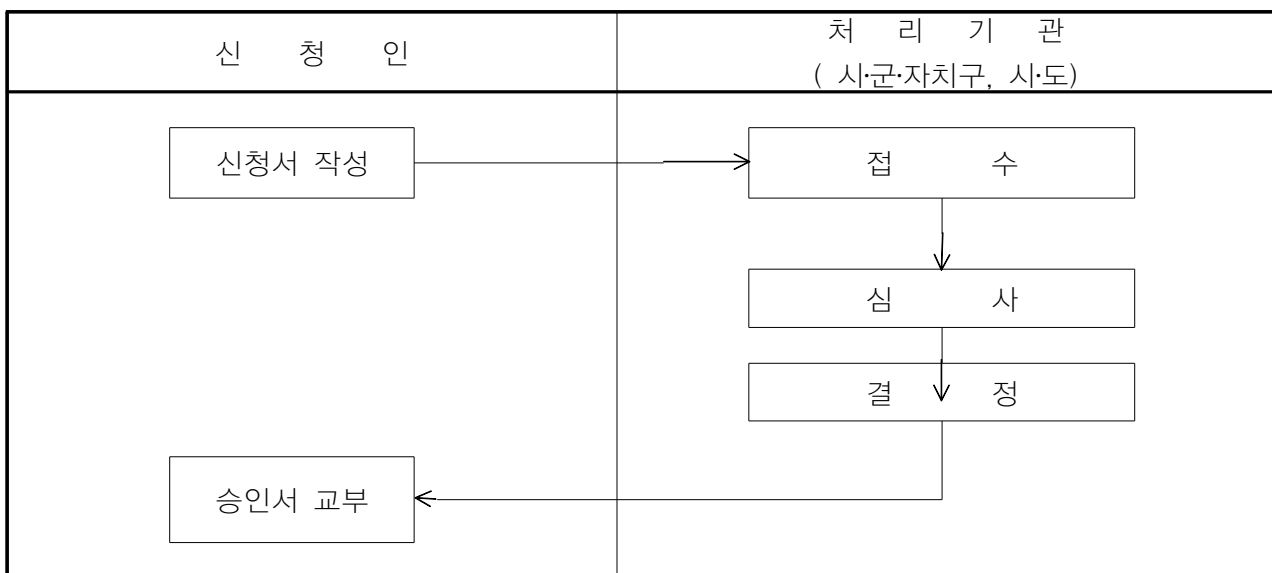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납부
3. 유의(참고)사항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농지법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법 제37조 저촉여부
2. 농지전용 용도변경의 적정성
3. 용도변경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4.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여부검토

□ 업무흐름도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용 도 변 경 신 청 내 역	농 지 소 재 지	번 지 외 필 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 74조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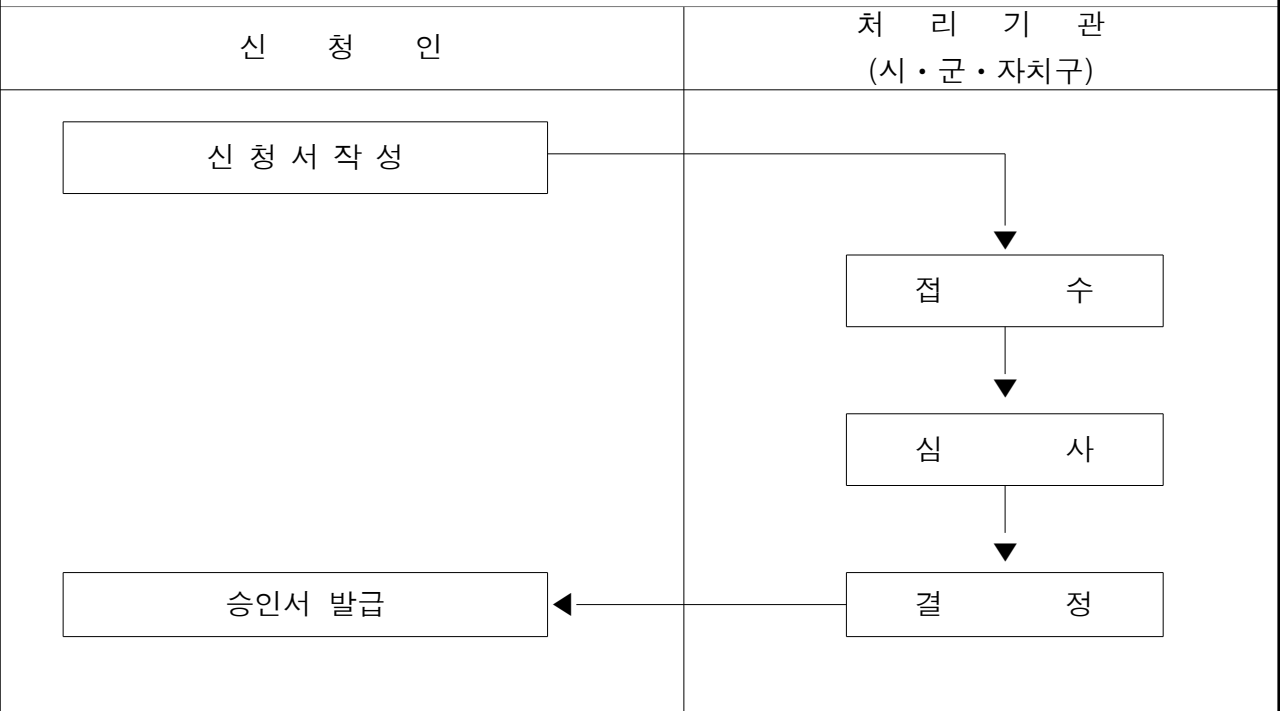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 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복지과	730-3324	즉시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의 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민원

2. 민원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군 접수요건)

가. 자 격

- 사망자가 사망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군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유골(봉안당에 한함)

나. 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이장) 1부
- 화장증명서 1부(안치할 때에 제출 가능)
- 제적등본 1부

3.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가. 공설봉안당

구분	사용기간	거주지	사용기준(원)		
			계	사용료	관리비
유연	15년	관내	175,000	100,000	75,000
		관외	225,000	150,000	75,000
		관내	275,000	175,000	100,000
		관외	355,000	255,000	100,000
무연	10년	관내	80,000	50,000	30,000

나. 공설묘지

사용 면적	사용기준(원)		
	계	사용료	관리비
1기당 5m ²	300,000	180,000	120,000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분묘의 형태 및 구조

-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와 구조를 시설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 묘지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함
- 분묘의 기당면적 5m²(1.5평) 원칙으로 하며, 정조식으로 접속하여 구역별로 통일시켜야 함.

2. 공설봉안당 사용면적

- 가. 단장 :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하
- 나. 합장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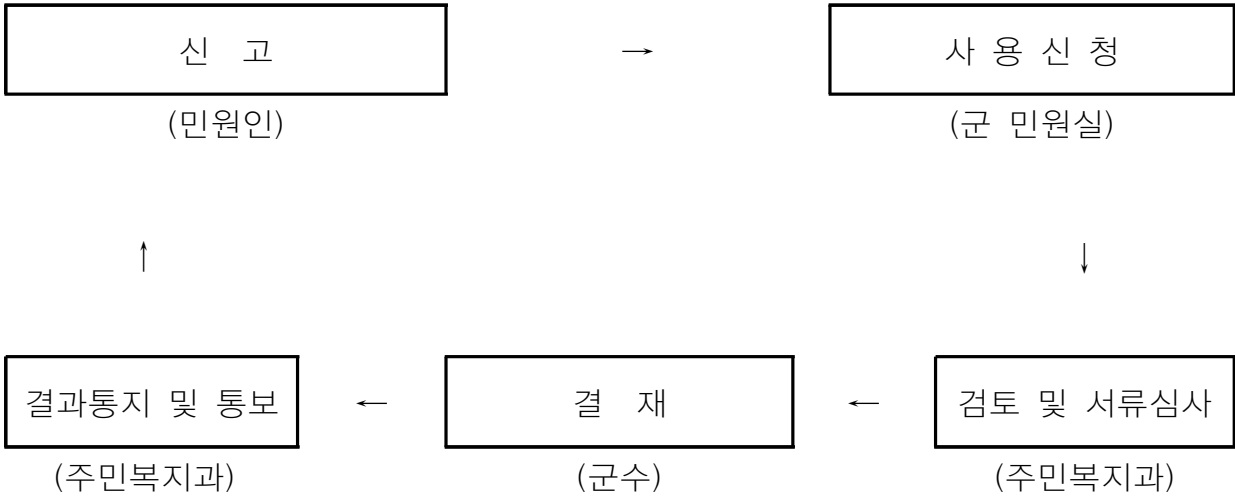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 사망자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개장 명령

- 허가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 묘지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였을 때
-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법정·조례·기타 군수가 명하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공익상 필요한 때

업무흐름도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 - 호) 문서번호 :

사망자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이유 (병명)		사망년월일	년 월 일 (시 분)	
장소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단장,합장)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매장(납골)년월일		
신청인	주소				사용기간	15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p>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인)</p> <p>옥 천 군 수 귀하</p>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증

(제 - 호)

사망자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이유 (병명)		사망년월일	년 월 일 (시 분)	
장소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단장,합장)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매장(납골)년월일		
신청인	주소				사용기간	15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p>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공설장사시설 사용을 허가하오니 동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사항을 준수하여 매장(납골)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옥 천 군 수</p>						

개 장 허 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복지과	730-3324	3일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의 의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민원

2. 분묘개장공고의 대상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묘지에 설치한 분묘

3. 민원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군 접수요건)

가. 자 격

- 토지소유자 (점유자, 기타 관리인 포함)
-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매장된 유골의 매장자나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 사업이 뚜렷하고 타법령에 따라 제반 인허가를 득한 개인사업 목적상 개장허가를 받고자하는 토지 소유자

나. 구비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기존분묘 사진, 서면 통보문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허가기준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당해분묘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2. 개장공고 방법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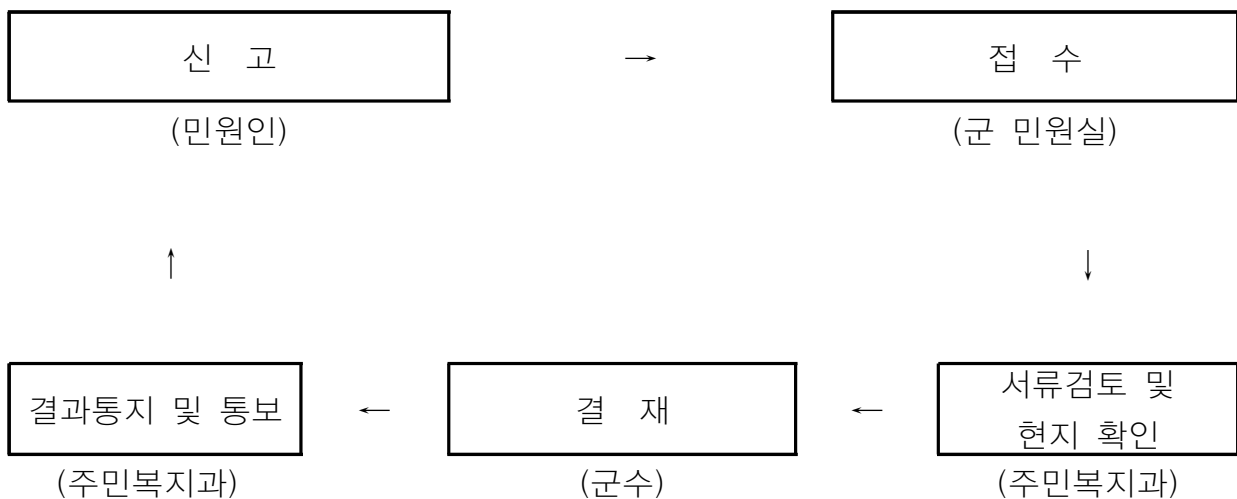
- 통보기간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 통보방법 : 서면(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으로 연고자에게 통보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기간 : 3개월
- 공고횟수 : 2회 이상 공고
- 공고방법 : 중앙 일간신문 포함한 2종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옥천군 및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일간지

※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다음 공고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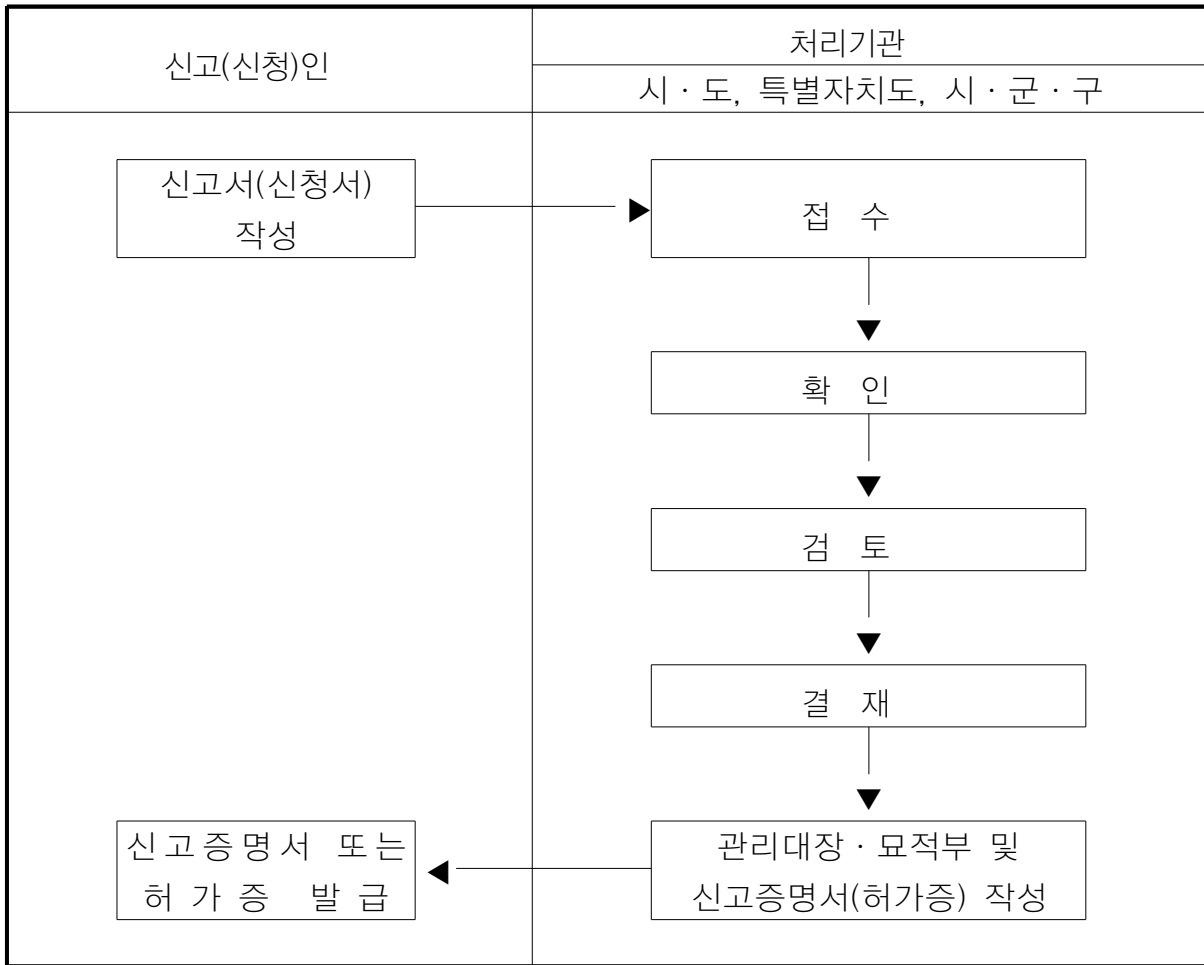


제 호		개장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 장 또는 봉 안 연 월 일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 장 · 화 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귀하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장 <input type="checkbox"/> 신고증명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연 월 일	. . .
	묘 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 장 또는 봉 안 연 월 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 장 · 화 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분 묘 사 진

원경	위치		분묘번호
근경		분묘번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복지과	730-3344	4일	

□ 개요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지급되는 급여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지급되는 급여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해산급여 : 급여지원신청서, 출생신고서(출생신고 시 미제출)
- 장제급여 : 급여지원신청서, 사망신고서(사망신고 시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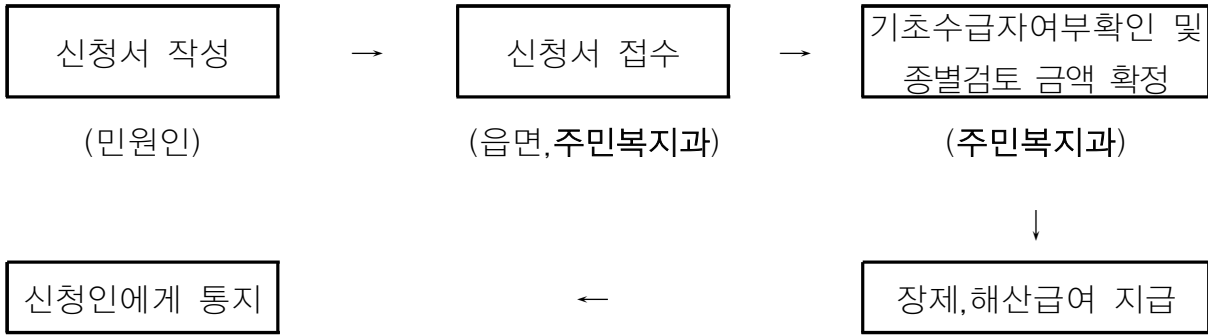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신청함

□ 심사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검토
- 장제급여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지급
- 해산급여 :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

□ 업무흐름도



[서식 5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해산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급여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사망원인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복지과	730-3352	14일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의의

-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구비서류

-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1부.
- 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다. 소득신고서
- 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text{◎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의 종류별 가액}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 부양의무자 조사

◎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 업무흐름도

민원인 → 신청(읍면 복지민원팀) → 민원서류 접수(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조사 → 가정방문 생활실태조사(담당직원 민원인 가구 방문) → 신청인 선정기준 적합여부 심사 → 통보(수급자 신청 관련 결과 통보) → 이의신청(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²⁾	수급자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안 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놓여촌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 ④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보유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용희망 통신사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input type="checkbox"/> 아 동·청 소 년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추가 아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input type="checkbox"/> 학용품비 <input type="checkbox"/> 생활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활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복 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활 동 지 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input type="checkbox"/> 긴급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노 인 복 지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바우처)이용권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생계지원 <input type="checkbox"/> 의료·재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후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⁵⁾ <input type="checkbox"/> 정부양곡(kg)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분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input type="checkbox"/>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⁶⁾ ※대표계좌 기재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_____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 계 : _____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_____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장 애인, 장애인연금, 한부 모가족, 기타(개발제한구 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무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 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명 서류 12. 놓여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놓여촌경역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노인·아동·청소년, 기타 (타법의료급여 ⁷⁾), 기타 (차상위분인부담 경감), 놓여촌양육수당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신청 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유 의 사 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0일** 이내입니다.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육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중지 됩니다.
- 3-2.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유의사항

-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8.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9.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0.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11.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2.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13.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 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내수면 어업허가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환 경 과	730-3543	5일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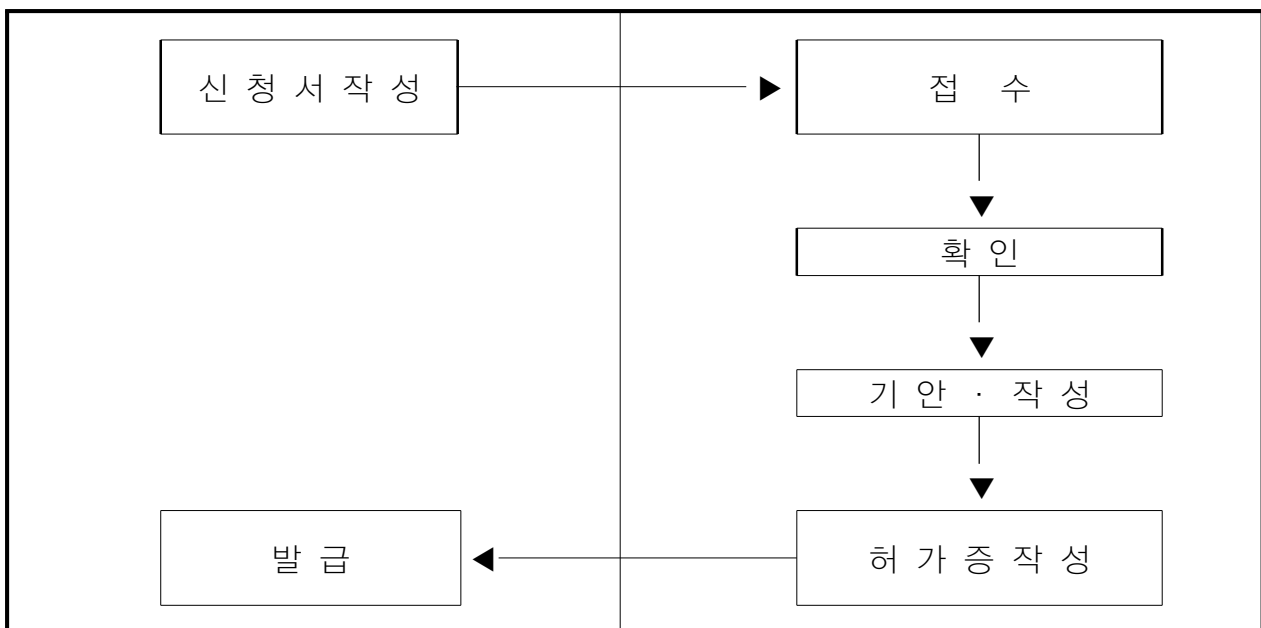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어업자로 확정되어야 신청가능)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옥천군 수입증지, 면허세
3. 유의(참고)사항
 - 어업자로 확정되어야 됨
 - 어업기간 연장 시(기신고필증 첨부)
 - 각망어업허가 신청 시(어업구역도 첨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결격사유 등 확인
-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법적검토(타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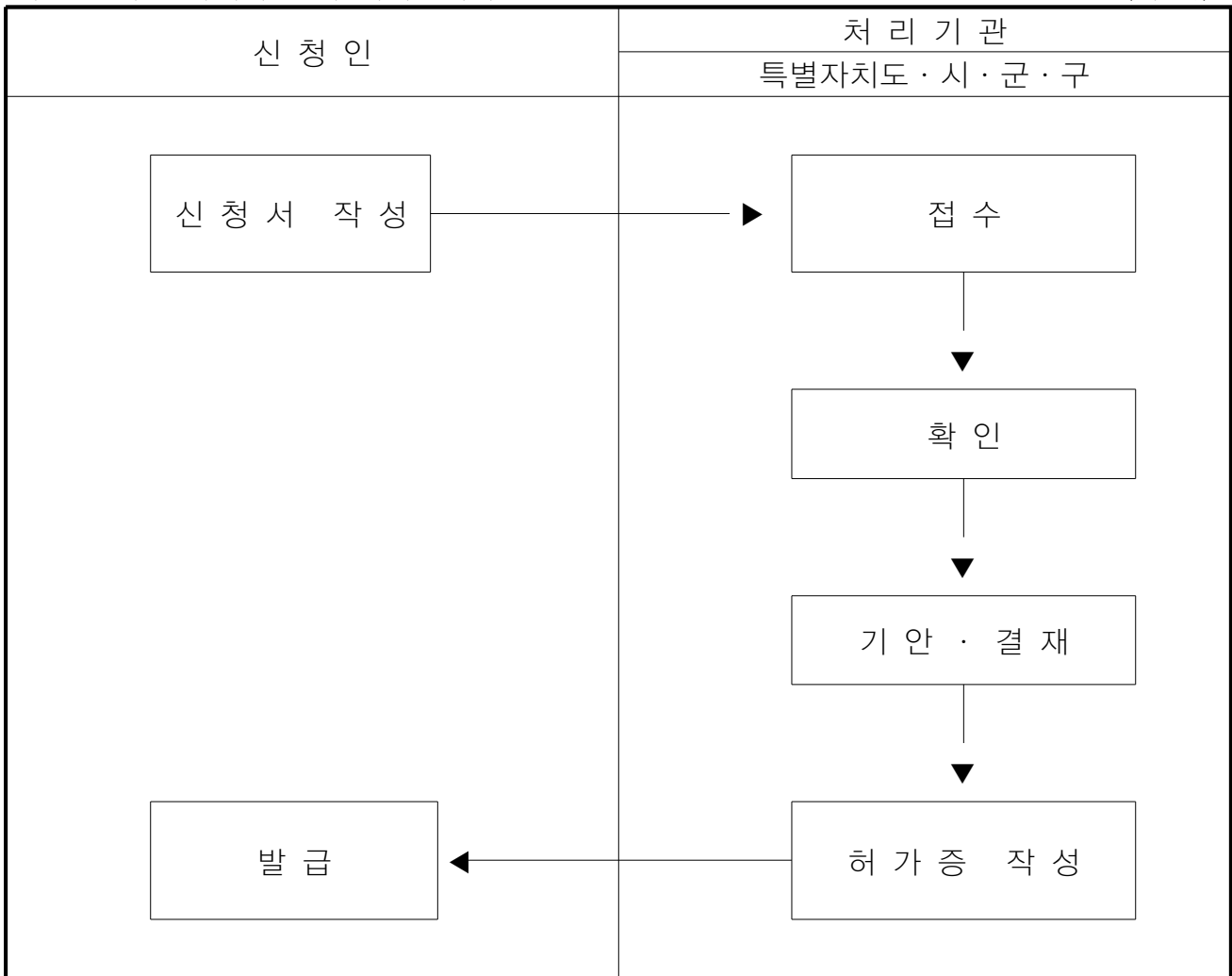
□ 업무흐름도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종류									
⑤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⑥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⑦ 조업구역		일원							
⑧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⑨ 포획 · 채취물의 종류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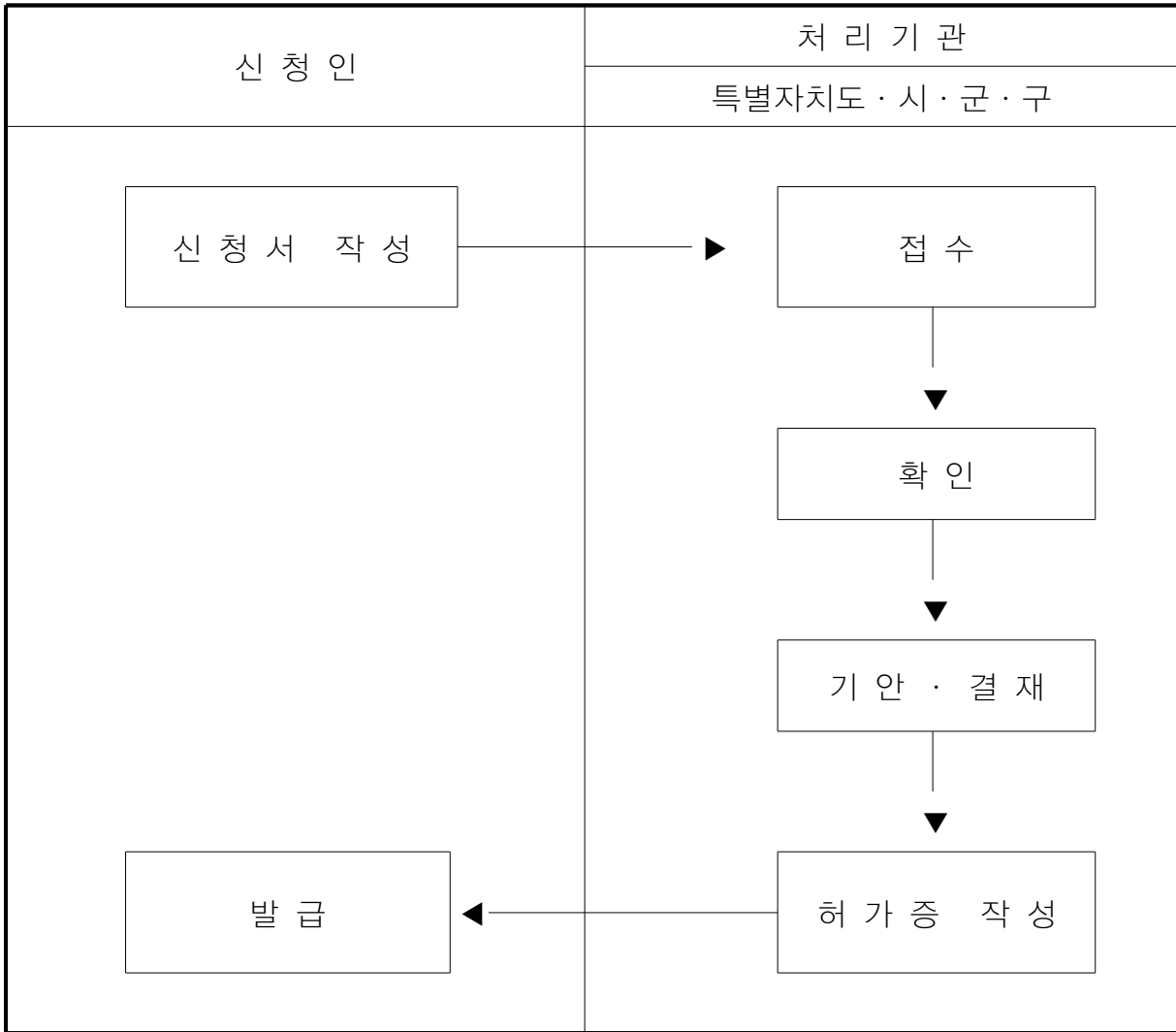
(뒤 쪽)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낙시업용)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낙시터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⑤ 낙시터의 명칭과 수면적		낙시터 수면적
⑥ 자원조성 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⑦ 낙시터 부대시설		
⑧ 포획물의 종류		
⑨ 낙시기간		. . .부터 . . .까지(월간)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p style="text-align: center;">「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내수면 어업신고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수료
환 경 과	730-3543	1일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어업자로 확정 및 시설물설치의 경우 완료되어야 함)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신고필증 교부 후 면적에 따라 면허세 납부
3. 유의(참고)사항
 - 사업장 제한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어업기간 연장 시(기 신고필증 첨부)
 -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 도면 첨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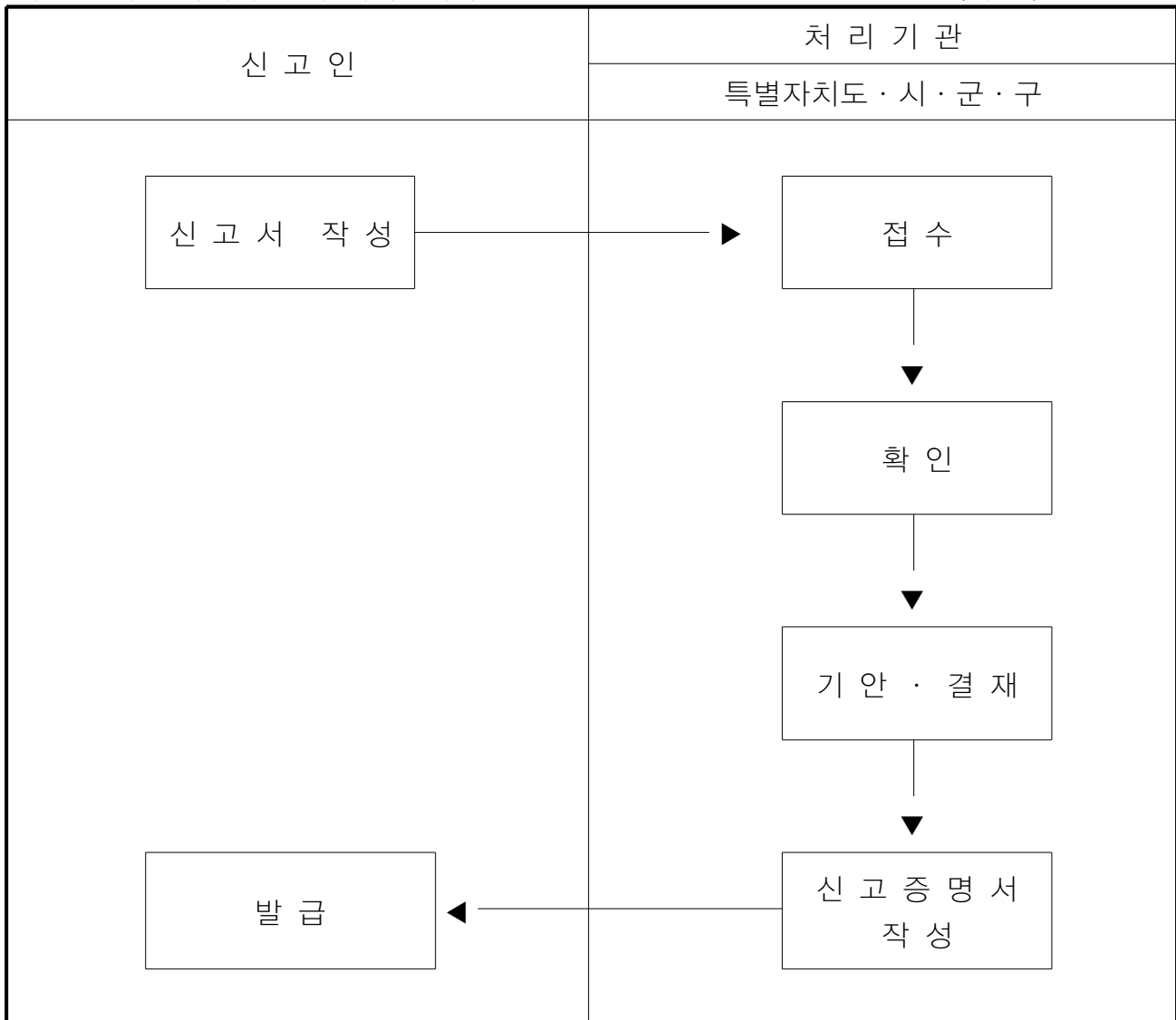
- 사업신청지 입지가능여부 확인
-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 타법 제한여부 검토(타인, 허가, 승인 등 필요여부)

□ 업무흐름도

- ⇒ 신청서 접수 → 확인(현지시설) → 신고필증 작성 → 결재
→ 신고필증 통지 → 면허세 납입증명서 사본 → 신고필증 교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산지전용허가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산림녹지과	730-3472	25일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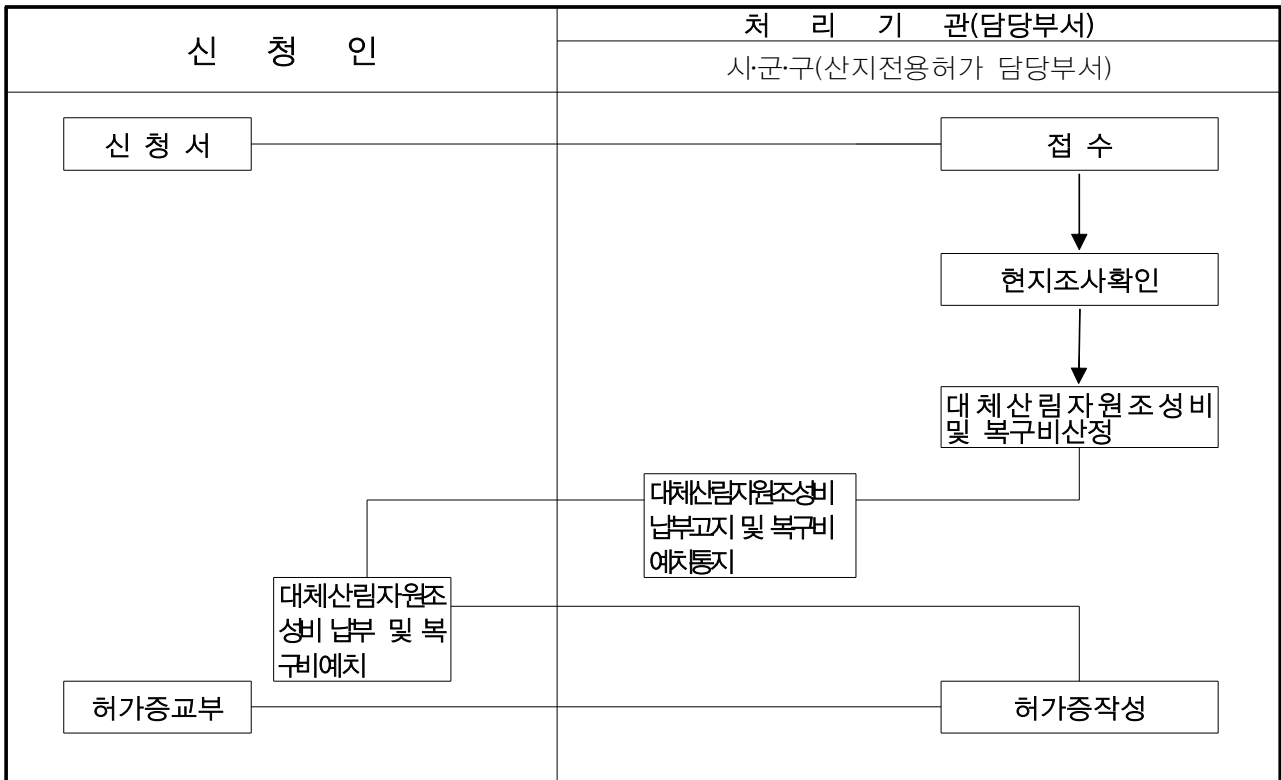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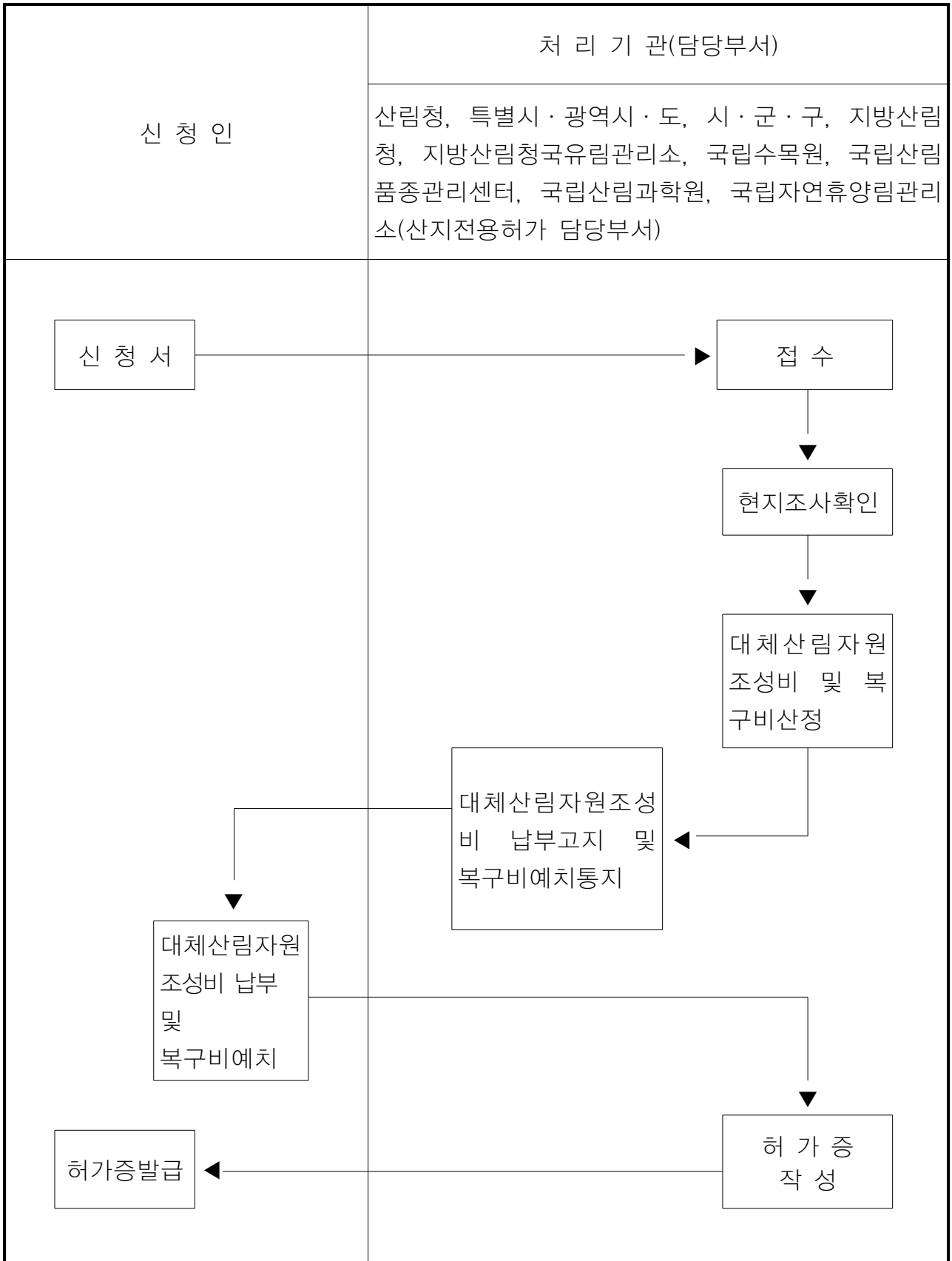
1. 소유권 및 산지내역 등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2.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3. 산지관리법 제50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산림녹지과	730-3472	25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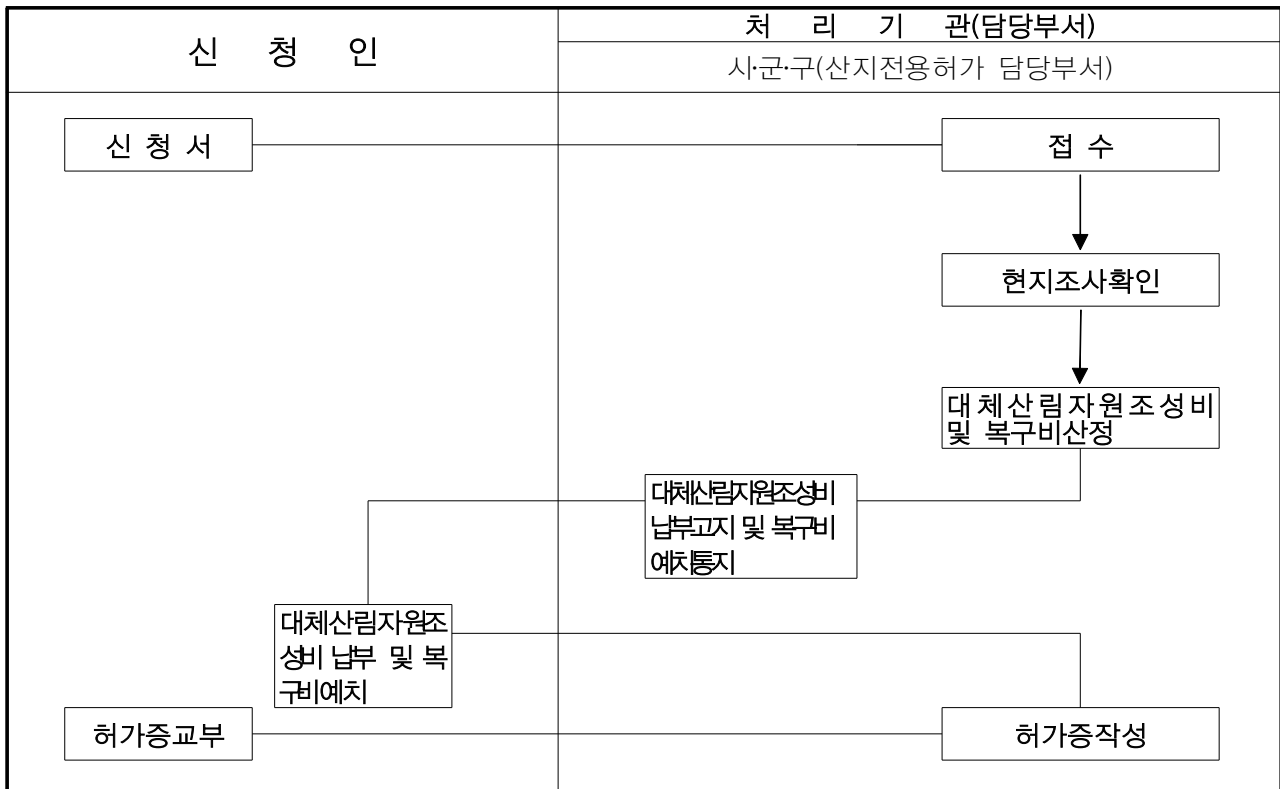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소유권 및 산지내역 등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2.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산지전용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산림녹지과	730-3472	10일	5,0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소유권 및 산지내역 등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2.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3. 산지관리법 제50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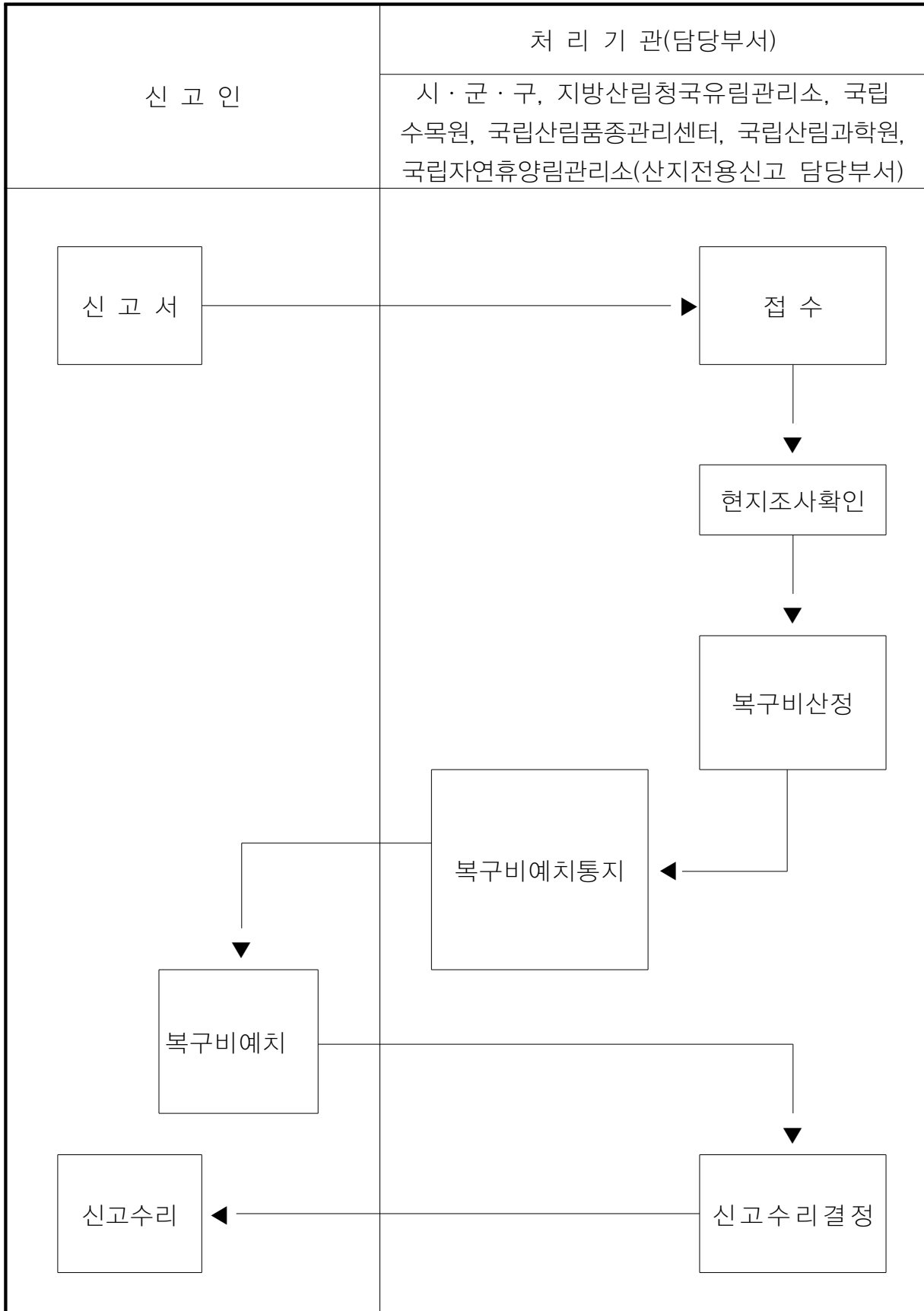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 재 지					지 적		m ²						
전 용 면 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m ²		m ²			m ²		m ²				
부 산 물 생 산 현 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 종	본 수	재 적	수 종	본 수	재 적	계	석재	토사			
			본	m ³		본	m ³	m ³	m ³	m ³			
전 용 기 간													
전 용 목 적													
<p>「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p>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심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산지전용변경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산림녹지과	730-3472	10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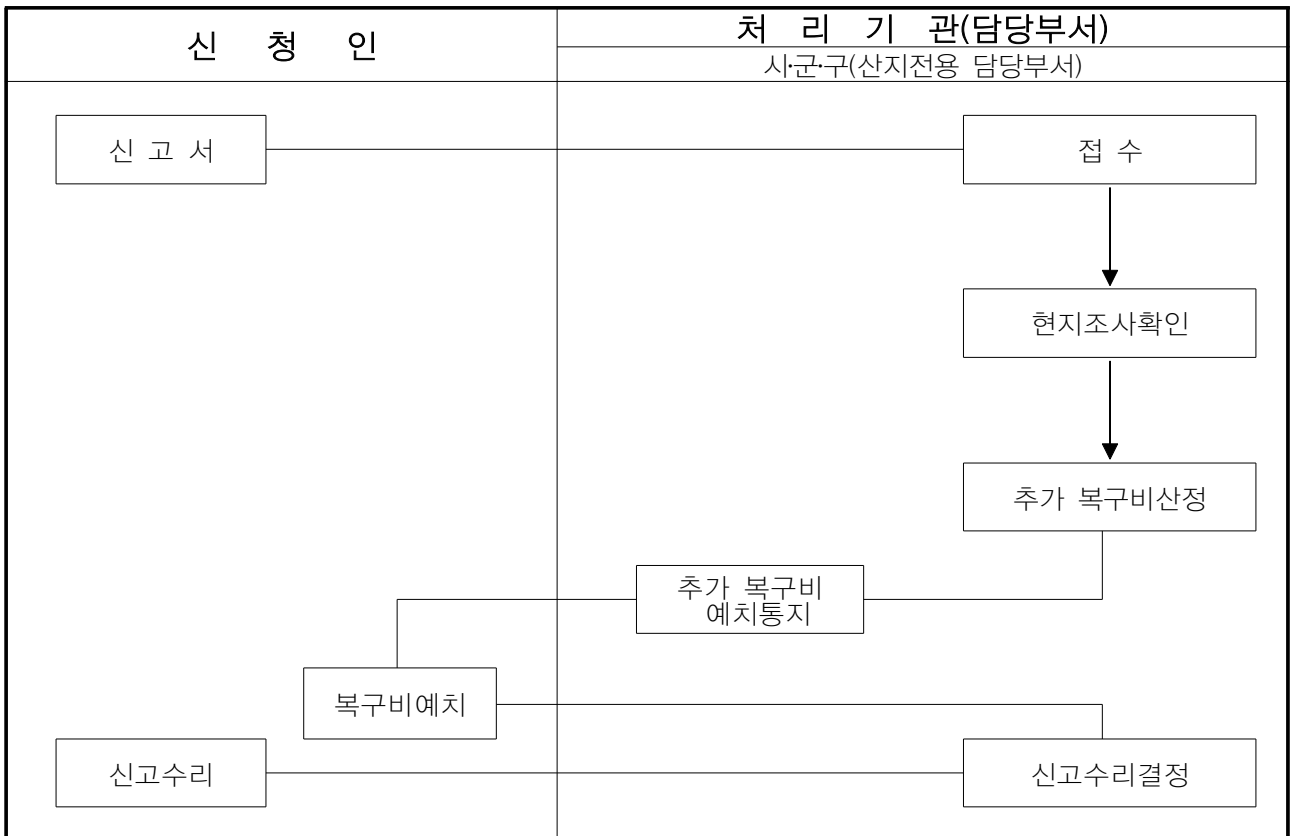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행정기관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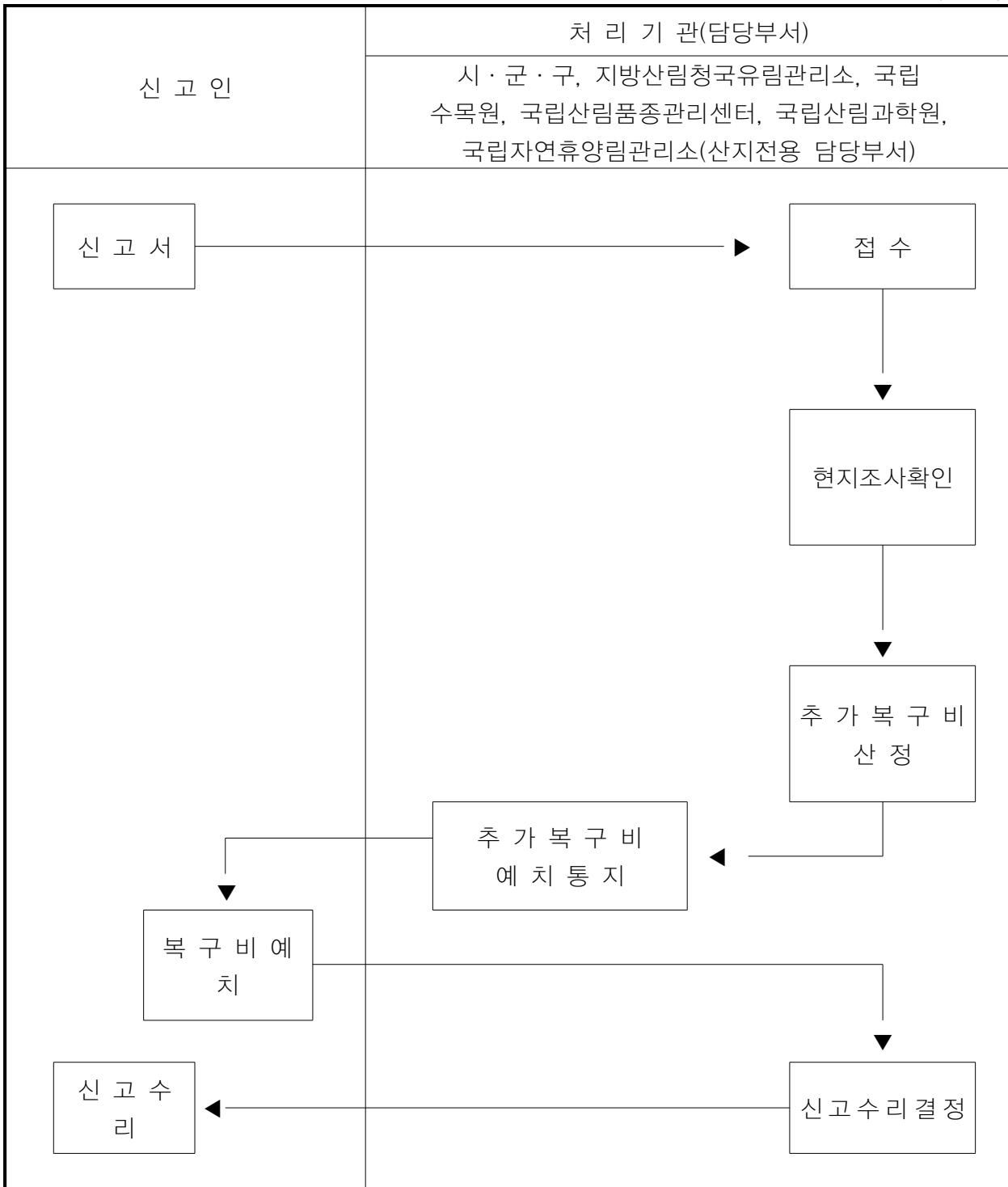
1. 소유권 및 산지내역 등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2.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골재채취허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안전건설과	730-3503	21일	아래참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위치도 1부(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1,200 또는 1/3,000 또는 1/5,000)
-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신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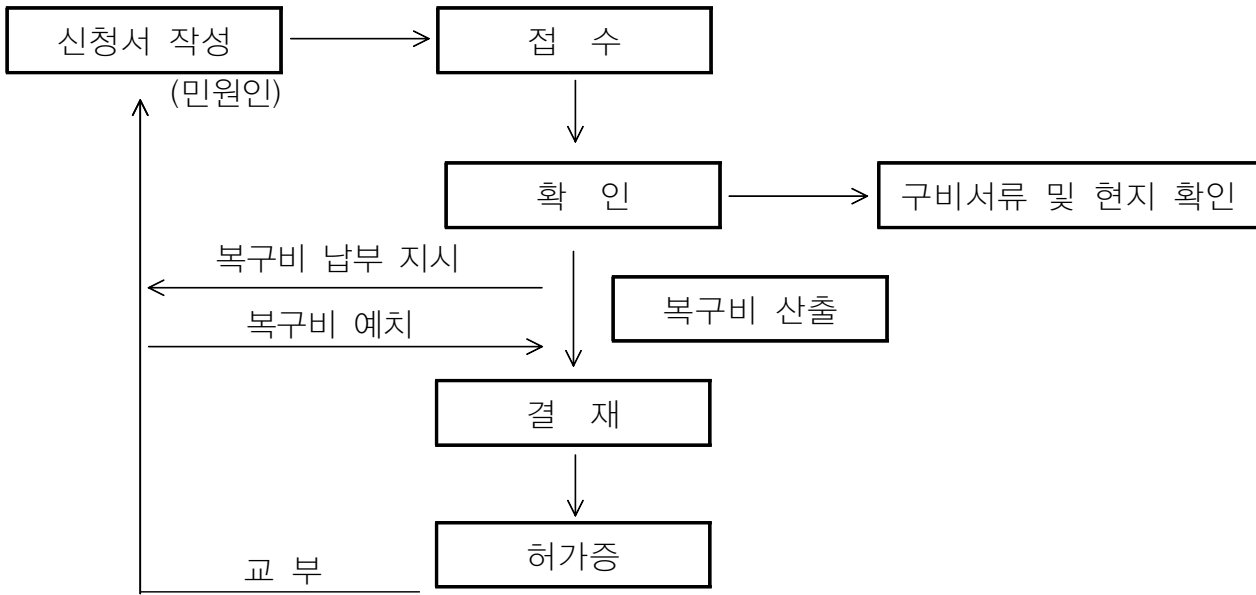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 액	비고
수수료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면허세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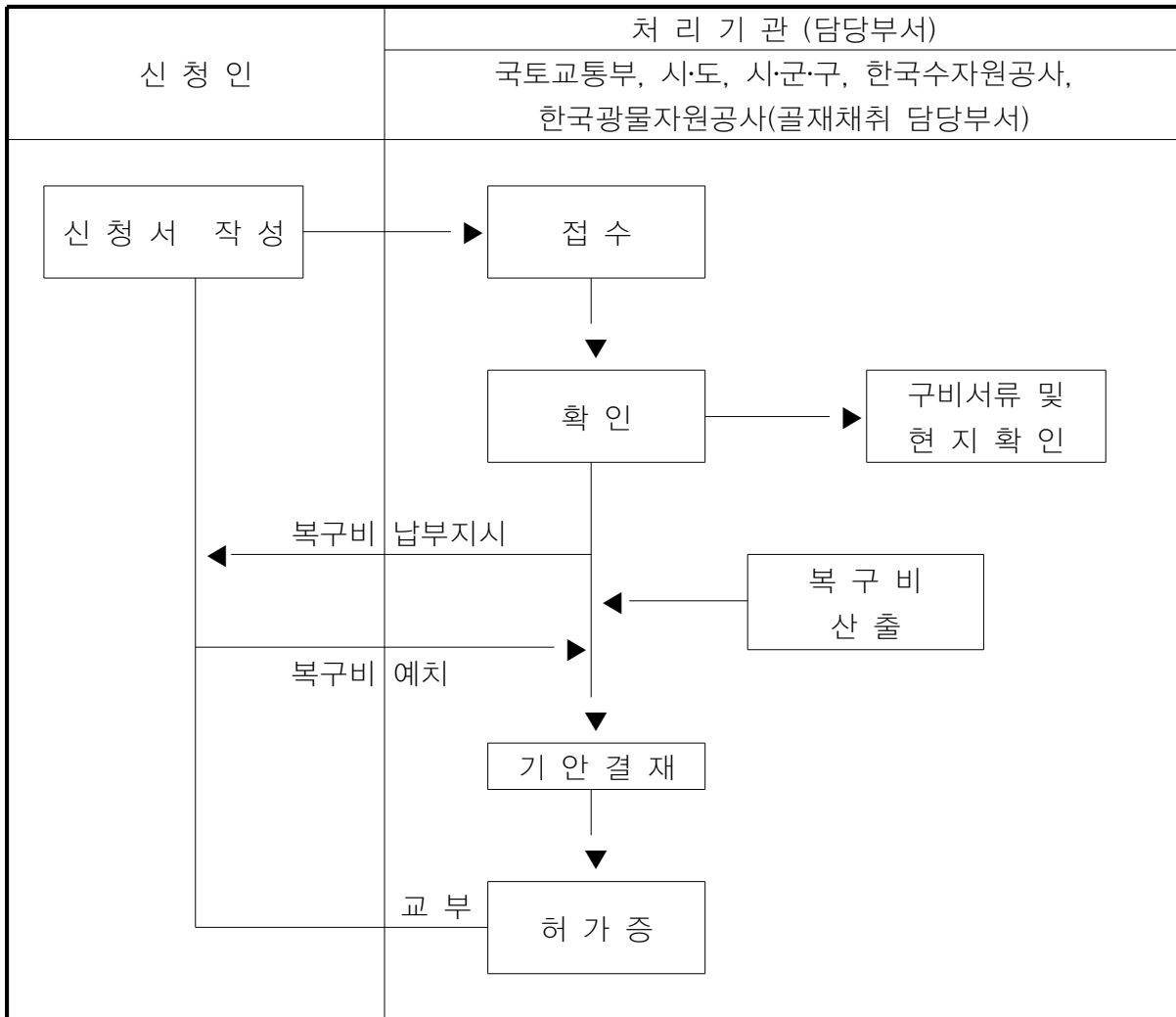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업무흐름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도로점용허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안전건설과	730-3502	5일	1,0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 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1,000원(군수입증지)	면적 규모별로 점용료 및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적용대상 :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한함(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

□ 업무흐름도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적습니다.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 용 목 적						
⑥ 점용장소·면적						
⑦ 점 용 기 간		⑧ 굴 착 기 간				
⑨ 공작물(시설)구조						
⑩ 공사 실시 방법						
⑪ 공 사 시 기						
⑫ 도로복구 방법						
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⑭수수료 1,000원
등에 관한 서류						

※ 신청안내

(뒷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도·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건설과·건설관리과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⑤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적습니다.
-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적습니다.
- ⑬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 ⑭란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관리청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3일)	구·읍·면	시·군	5일(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 사용	시	시	4일(3일)	시·군	시·군	4일(3일)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구·시·군	시·도	8일(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구·시·군	구·시·군	5일(3일)			7일(5일)

주: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⑨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
- ⑩란은 당초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3일)	구·읍·면	시·군	5일(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7일(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지방국토관리청	7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시	시	4일(3일)	시·군	시·군	4일(3일)			국도관리사무소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구·시·군	시·도	8일(5일)			국도관리사무소	7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구·시·군	구·시·군	5일(3일)			국도관리사무소	7일(5일)

주: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안전건설과	730-3502	아래참조	1,4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점용목적	구비서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 (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 (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 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 리 기 간
건설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수의 사용 -- 22일 •토지의 점용 -- 10일 •하천부속물의 점용 -- 14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20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28일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 20일 •식물(죽목)의 재식 -- 5일 •선박의 운항 --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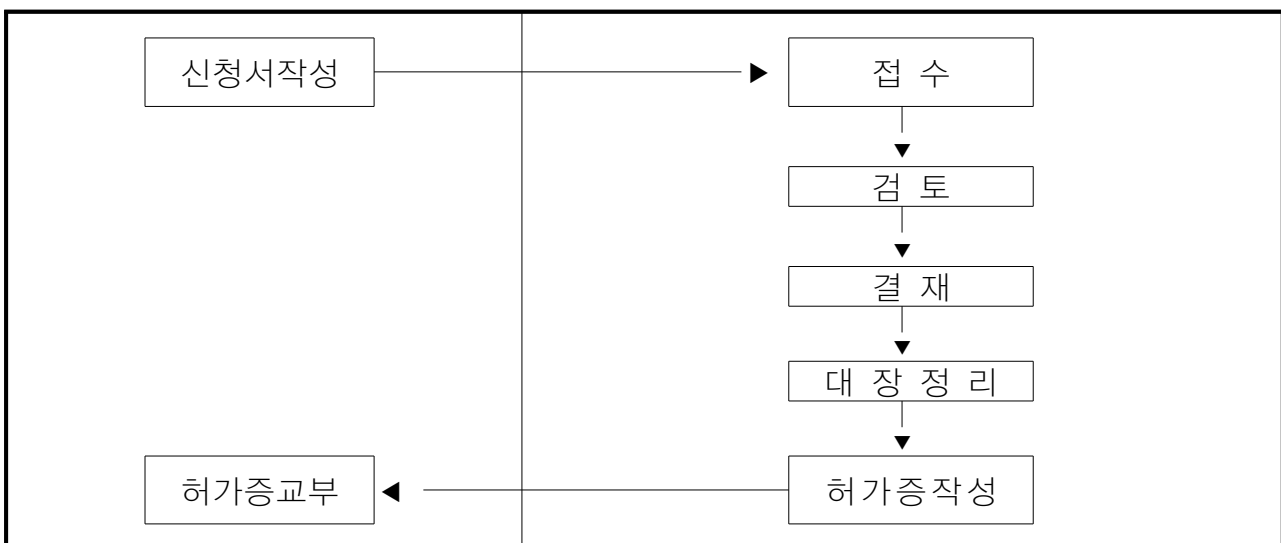
3.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 액	비고
수수료	1,400원(옥천군 수입증지)	점용료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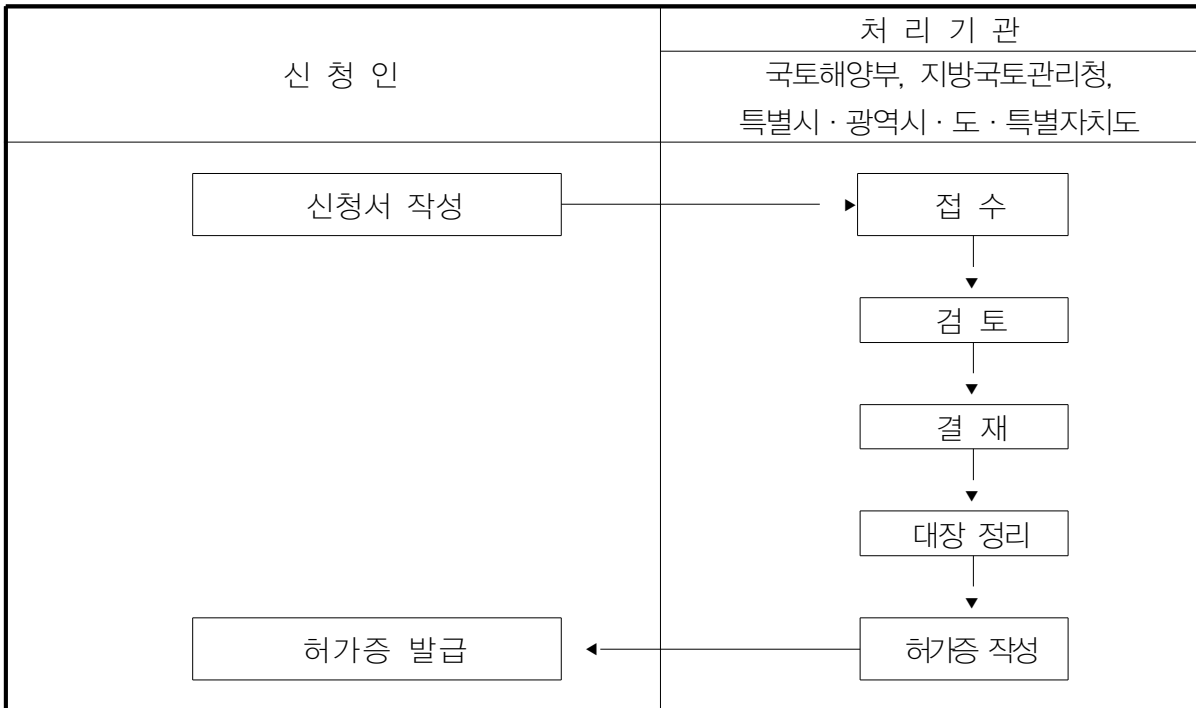
□ 업무흐름도



<input type="checkbox"/> 하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 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 용 (행 위)개 요	⑤ 하 천 명		
	⑥ 점용(행위) 위치	⑦ 점용(행위)면적	m ²
	⑧ 점용(행위) 목적		
	⑨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p>「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 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 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 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① 성명(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④ 성명(법인의 명칭)		⑤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⑦ 승계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⑧ 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⑨ 권리·의무의 내용				
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p>「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개발행위허가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도시건축과	730-3553~4	15일	아래참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신청서
- ② 사업계획평면도
- ③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⑤ 토지형질을 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경우에 한함)
-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	비고
면허세	18,000원(1종) 12,000원(2종) 8,000원(3종) 6,000원(4종)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 비과감면 가능
지역개발공채	1,500원/m ²	○면제대상 충북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별표2
이행보증금	총공사비의 20%이내	○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허가 규모(도시계획구역내)

대상 지역	면 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미만
공 업 지 역	3만㎡ 미만
생산·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
보 전 녹 지 지 역	5천㎡ 미만
관 리, 농 림 지 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 상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cm 미만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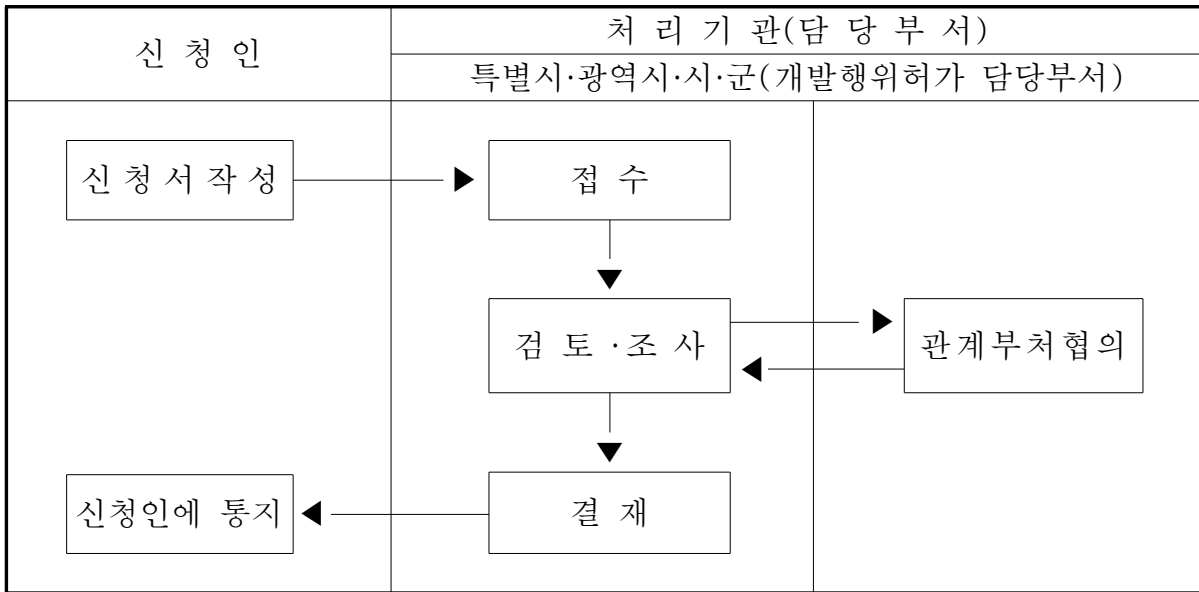
2. 시설기준

- 도로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급수시설
 - 상수도
 - 지하수 : 먹는 물 관리법 등의 기준에 맞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배수시설 : 하수도는 옥천군하수계획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며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등과 연결(배수관은 안지름 200m/m 이상)

※ 참고사항 :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처벌

- 각 용도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건축물 등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녹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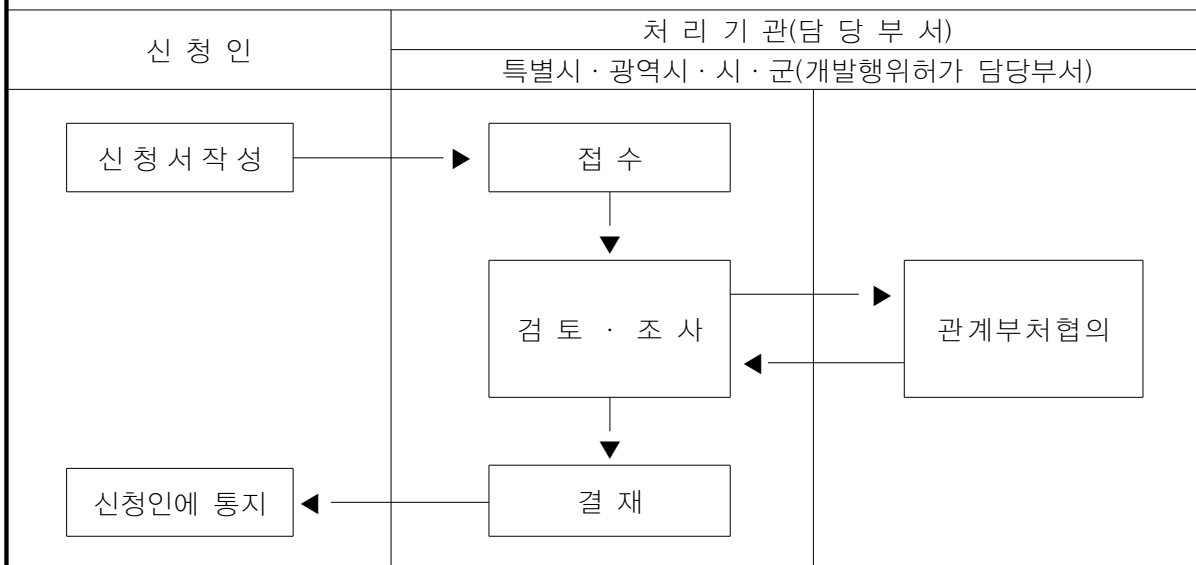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공작물설치 <input type="checkbox"/> 토지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채취 <input type="checkbox"/> 토지분할 <input type="checkbox"/> 물건적치				15 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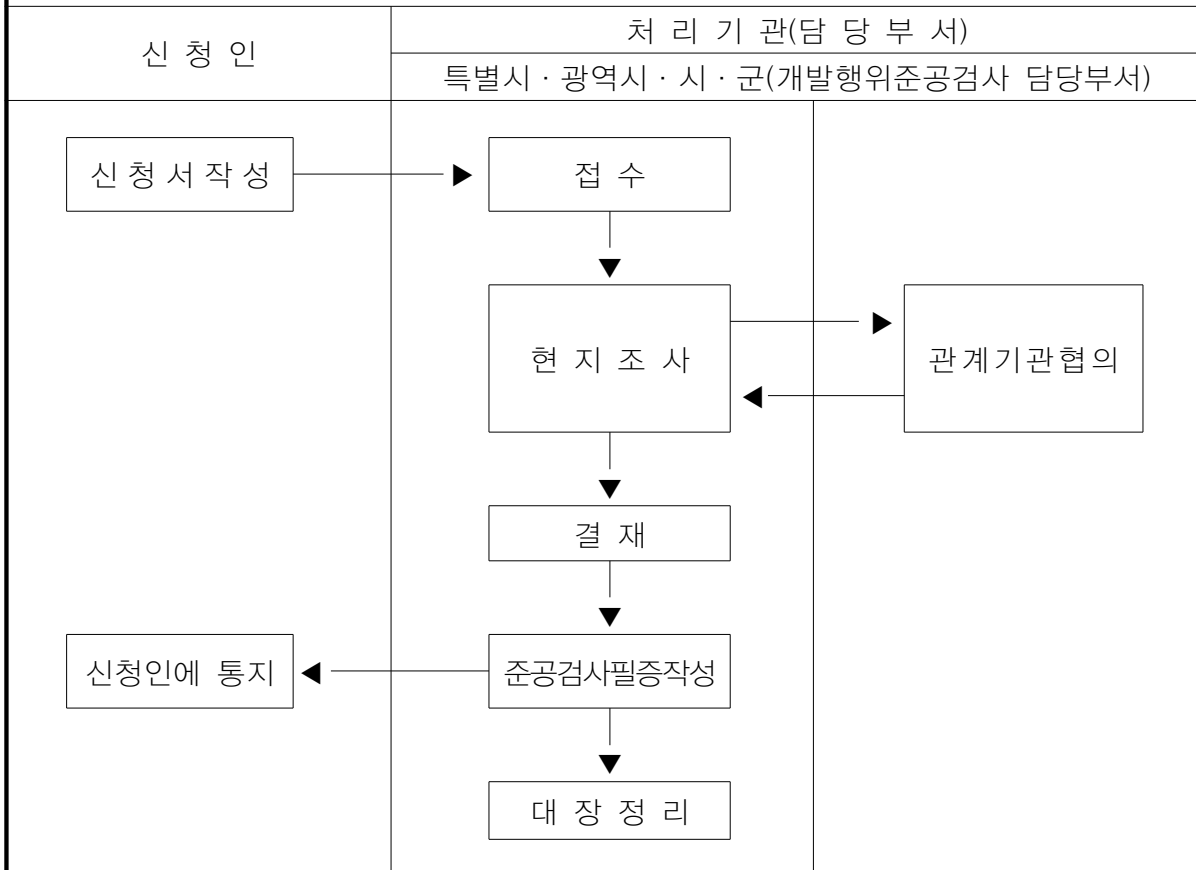


(뒤 쪽)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표 2] <개정 2009.8.19>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12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제주도 본도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도시건축과	730-3564	허가 7일 신고 3일	아래참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근거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 ▶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나) 허가대상 광고물

- 가로형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돌출간판(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옥상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항공기등 중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 게시시설(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다) 신고대상 광고물

- 가로형 간판(면적 5㎡ 초과인 것, 건물의 3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것)
-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고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세로형 간판은 제외)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아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단, 허가대상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제외)
- 벽보
- 전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허가(신고)

-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 ②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각 1부
- ③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각 1부
- ④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 관련 서류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정하는 서류 1부

2) 연장 허가(신고)

- ①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제출
- ②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토지·건물주의 승낙서(신고광고물과 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군청 도시건축과	읍·면사무소	
가. 옥상간판	가. 가로형간판	허가 : 7일 신고 : 3일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나. 세로형간판	
다.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다. 돌출간판	
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라. 지주이용간판	
마. 선전탑	마. 공연간판(2읍면이상 제외)	
바. 아치광고물	바. 애드벌룬(2읍면이상 제외)	
사. 공연간판(2읍면이상 게시)	사. 현수막(2읍면이상 제외)	
아. 애드벌룬(2읍면이상 게시)	아. 벽보(2읍면이상 제외)	
자. 현수막(2읍면이상 게시)	자. 전단(2읍면이상 제외)	
차. 벽보(2읍면이상 게시)	차. 창문이용광고물	
카. 전단(2읍면이상 게시)	카. 전기이용광고물	

3. 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제곱미터 이하 2,000 6제곱미터 초과시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제곱미터 이하 24,000 20제곱미터 초과시 2,000 1제곱미터당 가산 	
2. 세로형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제곱미터 이하 1,000 6제곱미터초과시 1,000 1제곱미터당 가산 	
3. 돌출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제곱미터 이하 10,000 3.5제곱미터 초과시 500 1제곱미터당 가산 아미용업소 및 의료 3,000 기관·약국 표지등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제곱미터 이하 30,000 10제곱미터 초과시 4,000 1제곱미터당 가산 	
6.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제곱미터 이하 12,000 10제곱미터 초과시 2,000 1제곱미터당 가산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간판에 준함 	1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3,000
12. 아취광고물		개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5,000 1,000
15. 벽 보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당 	2,500
16. 전 단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매당 	2,5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종류의 • 광고물 수수료의 •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15,000
8. 벽면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24,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 5개당 가산 	3,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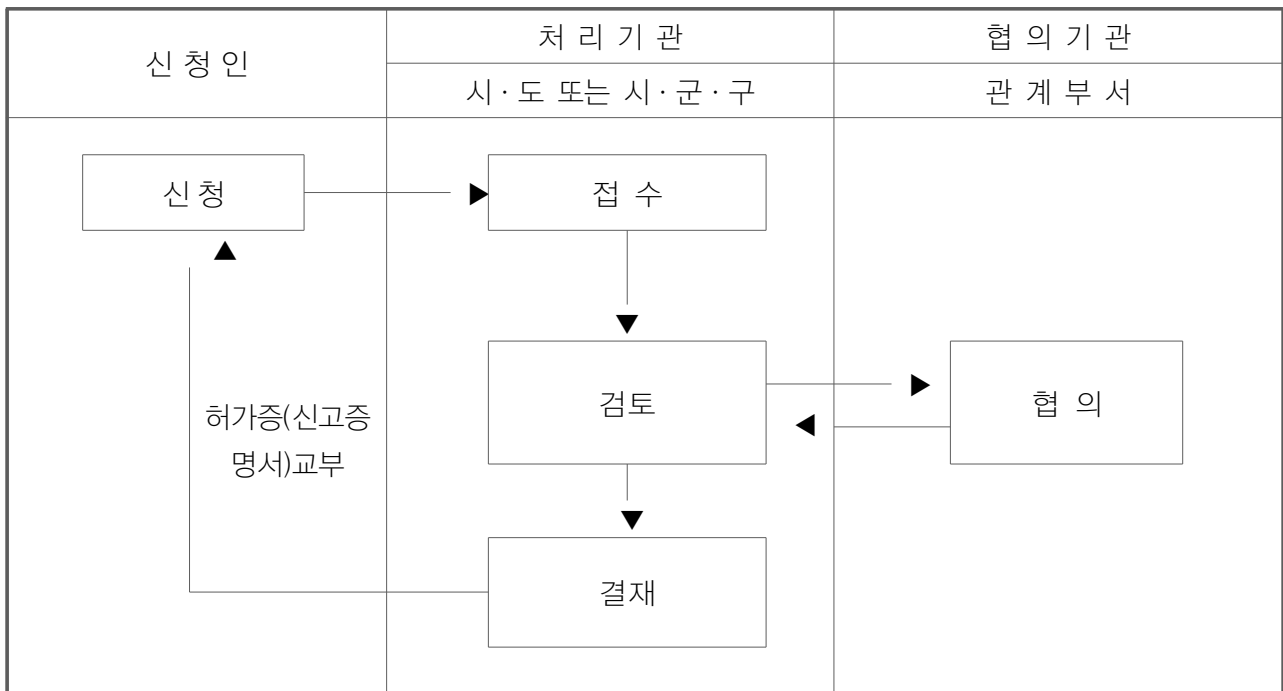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차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금지광고물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4. 업소별 광고물설치 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5.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
6. 수수료의 납부 여부
7. 기타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 업무흐름도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인)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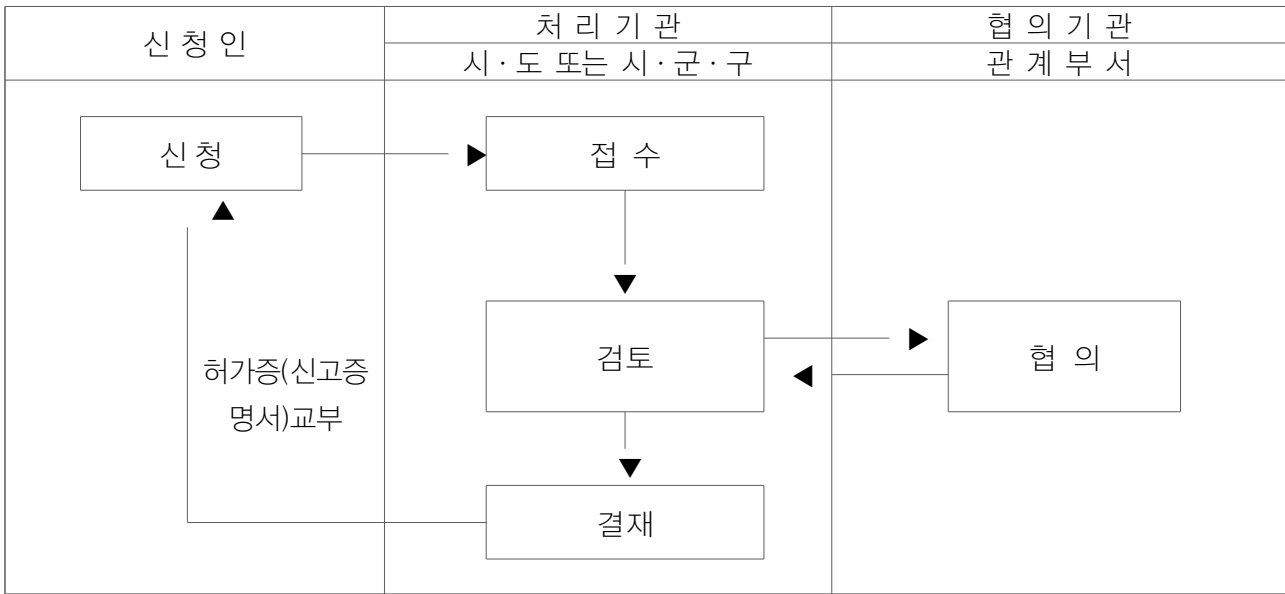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쳐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p>	<p>수수료</p> <p>※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p> <p>※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p>
------	---	---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축허가(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도시건축과	730-3581~6	3~7일	아래참조

□ 개요

- 건축허가(신고) 신청인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의 의무자임(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신고대상건축물(건축법 제14조)
 -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6. 농업 또는 수산업에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 연면적이 400㎡이하인 작물재배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건축물

□ 허가(신고) 신청 방법요

- 신청서 작성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로그인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관련 사항 입력 및 설계도서 등록
(※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대행 접수 가능)
- 민원 신청 : 신청시 수수료는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 납부하며 민원 신청정보는 군청 민원처리부서로 자동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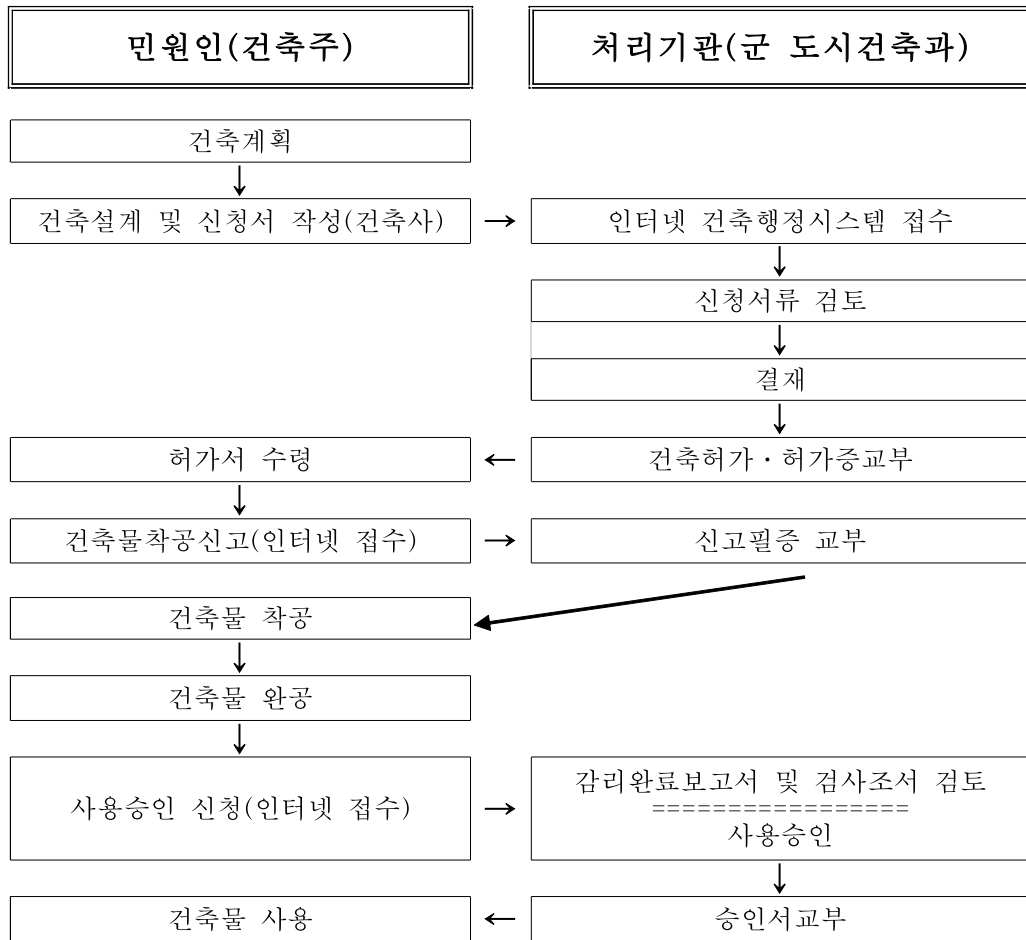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수료 (옥천군 수입증지)	3천원 ~ 120만원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 면적,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수수료, 면허세, 국민주택채권등을 매입 후 허가서 수령

□ 심사기준 및 처리절차

- 건축허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

□ 업무흐름도



□ 벌칙(건축법 제108조, 109조, 111조)

- 가.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건축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라.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위반한 자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예정일
---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허가사항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건축			

①건축주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총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총별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 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합계	m ²	용적률	%
④건축물 명칭			
⑤주건축물수		부속건축물	
	동	동	m ²
주용도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m ²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처리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작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input type="checkbox"/> 사도개설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input type="checkbox"/>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배수설비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하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공급신청	<input type="checkbox"/>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소음 ·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준치기간	년 월 일	일까지(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p>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함)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함.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p>※ 제2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허가사항변경</p>	<p>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평면도</p>
<p>용도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p>제출하는 곳</p>	<p>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구</p>	<p>처리부서</p>	<p>건축허가부서</p>
<p>수수료</p>	<p>「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p>	<p>처리기간</p>	<p>특별시·광역시 40~50일 특별자치도·시·군·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p>

근거법규

<p>「건축법」 제11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건축법」 제1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p>「건축법」 제19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p>「건축법」 제20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에정일
--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총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총별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 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합계	m ²	용적률	%
④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부속건축물	동 동 m ²
⑤주용도	세대/호/가구 [] 세대 [] 호 []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m 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하천점용허가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소음 ·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총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용도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없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수산업용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함)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제111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10조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여러 필자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등).
7. ⑧·⑨·⑰·⑳: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⑱·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⑳·㉒: 층별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0. ㉓~㉕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며, 1층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0㎡를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5층에 15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0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	150

작성례 3)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50㎡)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30㎡-13세대를 건축(대수선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척	/
------	----	---

도면종류	축척	/
------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제108조 및 제110조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여러 필자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등).
7. ⑧·⑨·⑰·⑳: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⑱·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⑳·㉒: 층별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0. ㉓~㉕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종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50㎡)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30㎡-13세대를 건축(대수선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7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단위 : 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9,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
	기 타 20,0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80,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5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5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1,40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2]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백원 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2.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m ²)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3천50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9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7천500제곱미터 미만	11시간
7천5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	16시간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7만5천제곱미터 미만	24시간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31시간
15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3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별표 3]〈개정 10.4.20〉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와 농업용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5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기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기타지역 : 1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업지역 : 3미터 이상 기타지역 : 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단독주택 : 1미터 이상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 : 2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5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기타지역 : 1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업지역 : 4미터 이상 기타지역 : 5미터 이상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2미터 이상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 수 료
상하수도사업소	730-4825	7일	없 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신청서 1부(「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②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③ 시설의 설치도 또는 표준도
- ④ 토지사용·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 ⑤ 원상복구계획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상하수도사업소	7일

3. 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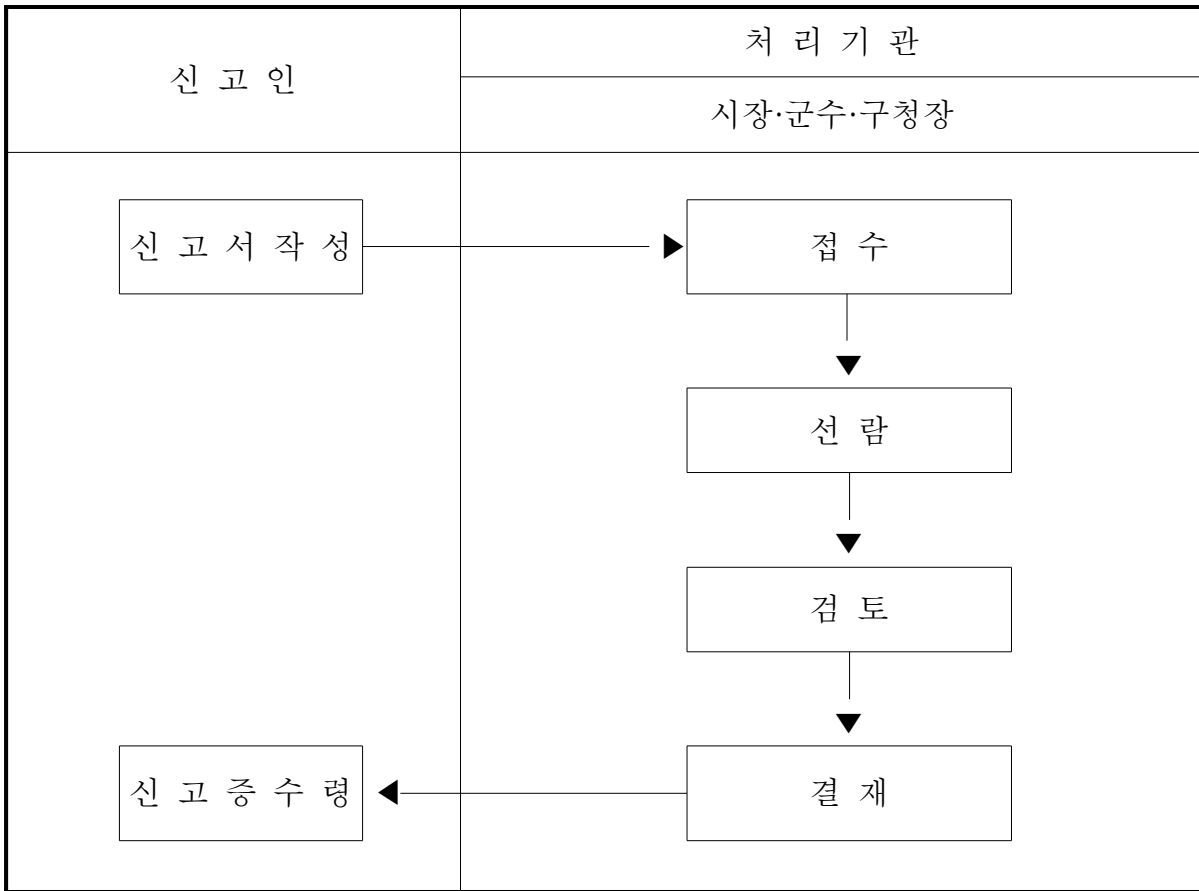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1일 양수능력 및 토출관 직경 확인

- 생활·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 및 토출관 직경이 40mm이하인 경우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 및 토출관 직경이 50mm이하인 경우

		신고번호		제 호	
지 하 수 개 발 · 이 용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개발·이용 내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 표 (경도, 위도)		용 도 (세부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취수계획량		m ³ /일		
양수설비 내역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지름 mm	
	설치깊이		m	양수능력 m ³ /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p>「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p>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p>1.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 시 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습니다.</p> <p>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p> <p>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p> <p>4. 원상복구계획서</p> <p>※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 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업무흐름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처리부서	전 화	처리기간	수 수 료
상하수도사업소	730-4825	30일	30,000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신청서 1부(「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②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③ 시설의 설치도 또는 표준도
- ④ 토지사용·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 ⑤ 원상복구계획서
- ⑥ 지하수영향조사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상하수도사업소	30일

3. 수수료 : 30,000원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1일 양수능력 및 토출관 직경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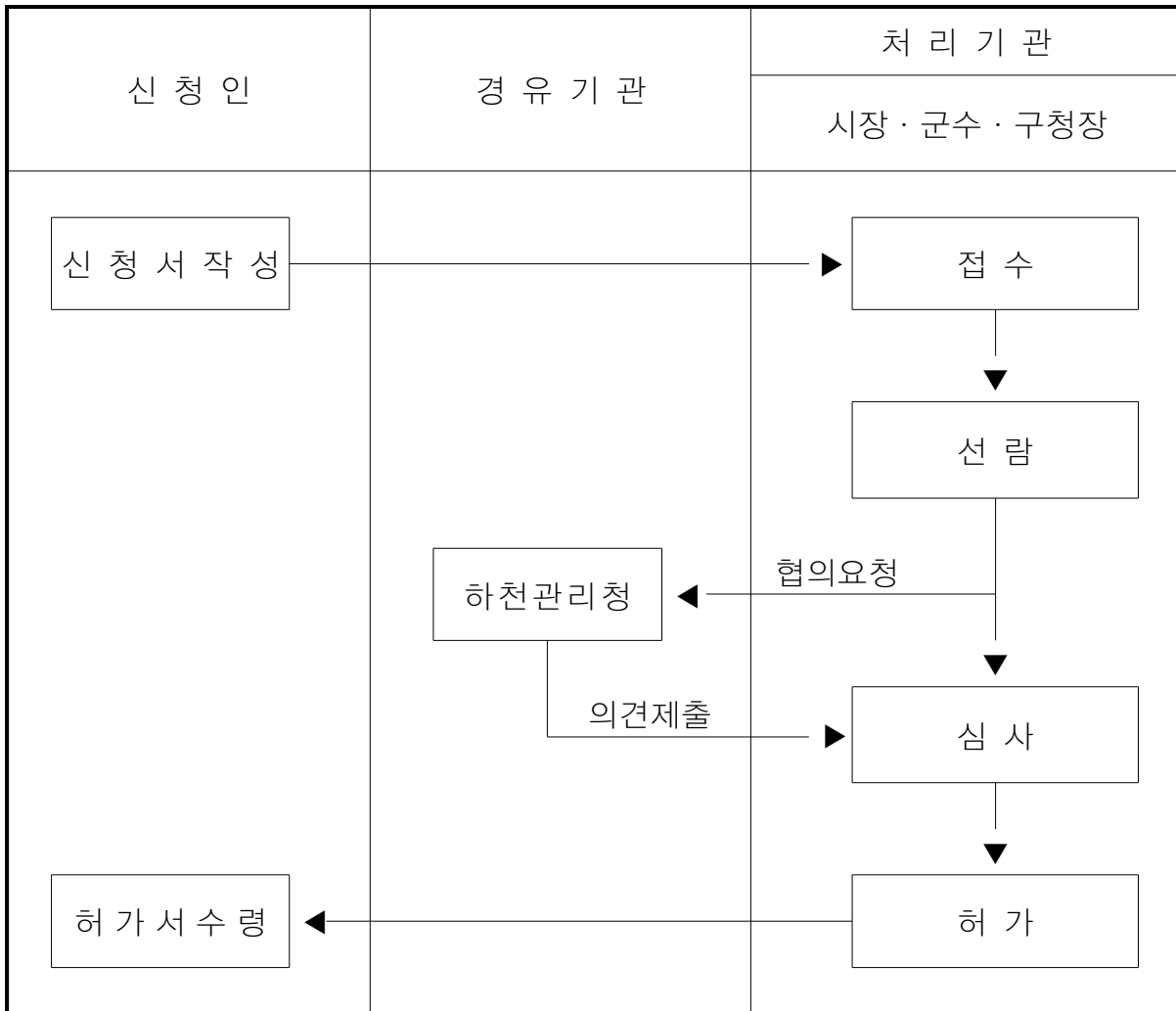
- 생활·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 및 토출관 직경이 40mm초과인 경우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초과 및 토출관 직경이 50mm초과인 경우

2. 양수능력의 합산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업무흐름도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생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출생신고서 1부(읍(민원팀)·면(복지민원팀)에 비치)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날인)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 과태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과태료 5만원 이하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3. 신고장소 :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지 처리 원칙)

4. 혼인 외의 출생자

- ① 모의 출생신고
 -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부란은 공란으로 함, 부의 성과 본은 따를 수 있음
- ② 부의 출생신고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 업무흐름도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 (한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혼인중의 출생자 <input type="checkbox"/> 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동거친족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에 관한 사항			
⑦ 임신주(週)수	임신 <input type="text"/> 주 <input type="text"/> 일	⑧ 신생아체중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kg
⑨ 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쌍태아(쌍둥이) → 쌍둥이 중 <input type="checkbox"/> 첫번째 <input type="checkbox"/> 두번째		
	<input type="checkbox"/>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중 <input type="text"/> 번째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⑩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⑪ 실제생년월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⑫ 최종졸업학교	<input type="checkbox"/> 무학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수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무학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수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⑬ 직업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순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가사 <input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무직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순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가사 <input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무직
⑭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⑮ 모의 총출산아 수	이 아이까지 총 <input type="text"/> 명 출산 (<input type="text"/> 명 생존, <input type="text"/> 명 사망)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 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② 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③ 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④ 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 ⑤ 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⑦~⑨ 란 : 출생자란 :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⑨ 란 : 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 ⑩~⑮ 란 : 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⑫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제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 ⑬ 란 :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통계 등)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분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 및 관련된 업무
 수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순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⑩ 가사: 전업주부 등 ⑫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⑮ 란 : 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첨부 서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 망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 없을 경우 사망증명서 첨부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인의 인우보증 (신분증 사본 or 인감증명서 및 도장) 또는 이장 도장 및 재직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과태료 5만 원 이하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3. 신고 장소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읍·면사무소, 사망자·매장지 또는 화장지(접수지 처리 원칙)

□ 업무흐름도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한자	(성) / (명)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수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순 병원 이송 중 사망 ⑩ 기타()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④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동거친족 ②비동거친족 ③동거자		관계		
			④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장 등)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사 망 원 인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나]	[가]의 원인			사망까지	
	[다]	[나]의 원인			기 간	
	[라]	[다]의 원인				
		기타의 신체상황		진단자	① 의사 ② 한의사 ③ 기타	
⑥사망종류		① 병사 ② 외인사(사고사 등)		③ 기타 및 불상()		
⑦ 외 사 사 항	사고종류	① 운수(교통) ② 중독 ③ 추락		의도성	① 비의도적 사고	
			④ 익사 수 화재 ⑥ 기타()		여 부	② 자살 ③ 타살 ④ 미상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로 기재)		
	사고지역	①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시도, 시군구)				
		③ 기타()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수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순 기타()				
⑧ 사 망 자	국 적		① 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최종 졸업학교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수 대학교 ⑥ 대학원이상			
	발병(사고)당시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혼인상태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성 방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버타임 실시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버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장소 구분: ①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⑩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기타사항	
③ 신고인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출인	· 제출인(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⑤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및 그 밖의 신체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⑥ 사망종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참고로 기재하되, ② 외인사는 질병 이외의원인 즉,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⑦ 외인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사항이 없는 경우 사고의 종류, 사고 발생지역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사망자	<p><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의 발병(사고)당시 직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 한 때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⑩ 가사: 전업주부 등 ⑫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div>

첨부서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인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의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식: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혼인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증인 2인의 연서 필요)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2. 신고 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 없음)

3. 유의사항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 내용을 기재

□ 업무흐름도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성명	한글	(성) / (명)	① 또는 서명	(성) / (명)	①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 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⑥ 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사항								
⑧ 증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⑨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①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① 또는 서명	
		모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① 또는 서명			성명	① 또는 서명	
		모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⑩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⑫ 국적	남편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처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⑬ 혼인종류	남편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처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⑭ 최 종 졸업학교	남편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수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처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수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⑮ 직 업	남편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수 판매종사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⑦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⑧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수 판매종사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⑦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⑧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①, ②란 및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 :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 ④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⑥란 :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⑦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 ⑧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⑨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⑪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⑭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 ⑮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수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순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㉑ 기사: 전업주부 등 ㉒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㉓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6.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한]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혼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당사자 쌍방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신고인 신분증 (1개월 이내 신고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① 협의이혼인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② 재판이혼인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③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2. 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 없음)

□ 업무흐름도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 이혼신고사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양부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타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③부모	③부모
	미성년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③부모	③부모	
⑥신고인출석여부 ① 남편(夫) ② 아내(婦)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실제결혼(동거)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⑨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⑩19세 미만 자녀 수	명	⑪이혼의 종류	① 협의이혼 ② 재판에 의한 이혼
⑫이혼 사유(택일)	① 배우자 부정 ② 정신적·육체적 학대 ③ 가족간 불화 ④ 경제문제 수 성격차이 ⑥ 건강문제 ⑦ 기타		
⑬국적	남편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적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처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적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⑭최종 졸업 학교	남편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수 대학교(교) ⑥ 대학원 이상	처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수 대학교(교) ⑥ 대학원 이상
⑮직업	남편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 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 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지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 ④ 란 : 이혼관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⑤ 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 정효력 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1**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 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⑥ 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⑦ 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⑧ 란, ⑨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⑭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 표시
 - ⑮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민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3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4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분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5 수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10 가사 : 전업주부 등 11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12 무직 : 특정한 직업이 없음 |
|---|

첨부 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접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서류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별지30호 서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cm×4cm) 1장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 학생증이나 국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

2. 발급대상자

- 신규발급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 영주귀국 한 해외교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
-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3.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민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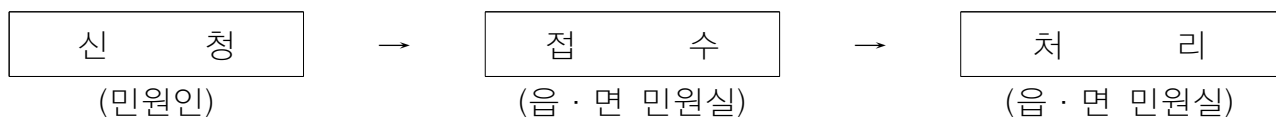
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업무흐름도

1. 검토 및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주민등록증 신청인 본인여부의 명확한 확인, 10지문 채취 등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사진(남자) (3cm×4cm)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3cm×4cm)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혈액형	특수기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input type="checkbox"/>]교부	[<input type="checkbox"/>]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주민등록기관 방문	[<input type="checkbox"/>]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이장	가족	소명 관계 서류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왼손 회전 지문 (각 칸의 크기 :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칸의 크기 :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 평면	왼손 4지 평면 (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4지 평면(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엄지 평면

첨부서류	1. 본인 사진 1장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cm×4cm)이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진을 2장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없음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아니거나 이종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 됩니다.
-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 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앞쪽 중 “담당 공무원”란과 “소명 관계 서류”란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은 검정색 볼펜이나 잉크가 나오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라고 표시된 항목만 한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장”란과 “가족”란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난입니다. “가족”란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민원팀)· 면(복지민원팀)		즉시	5,0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별지30호 서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cm×4cm) 1장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 종전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 제외)

2. 발급대상자

- 신규발급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
- 영주귀국 한 해외교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
-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3.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민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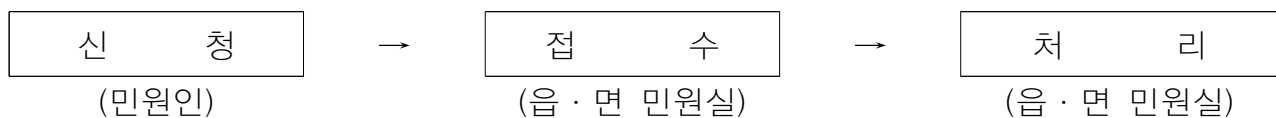
4.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업무흐름도

1. 검토 및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주민등록증 신청인 본인여부의 명확한 확인, 지문 채취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변경란 부족 []영주귀국 []용모(사진) 변경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기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교부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신청기관 방문 []주민등록기관 방문 []등기우편 수령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cm × 4cm)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라.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수수료 원
------	--	--------------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려면 그 신청을 한 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직접 발급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찾아가셔야 합니다.
3. 수수료를 내는 경우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4.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산업팀		4일~2일	1,0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농지취득자격인정서 1부(법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때)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 농지임대차계획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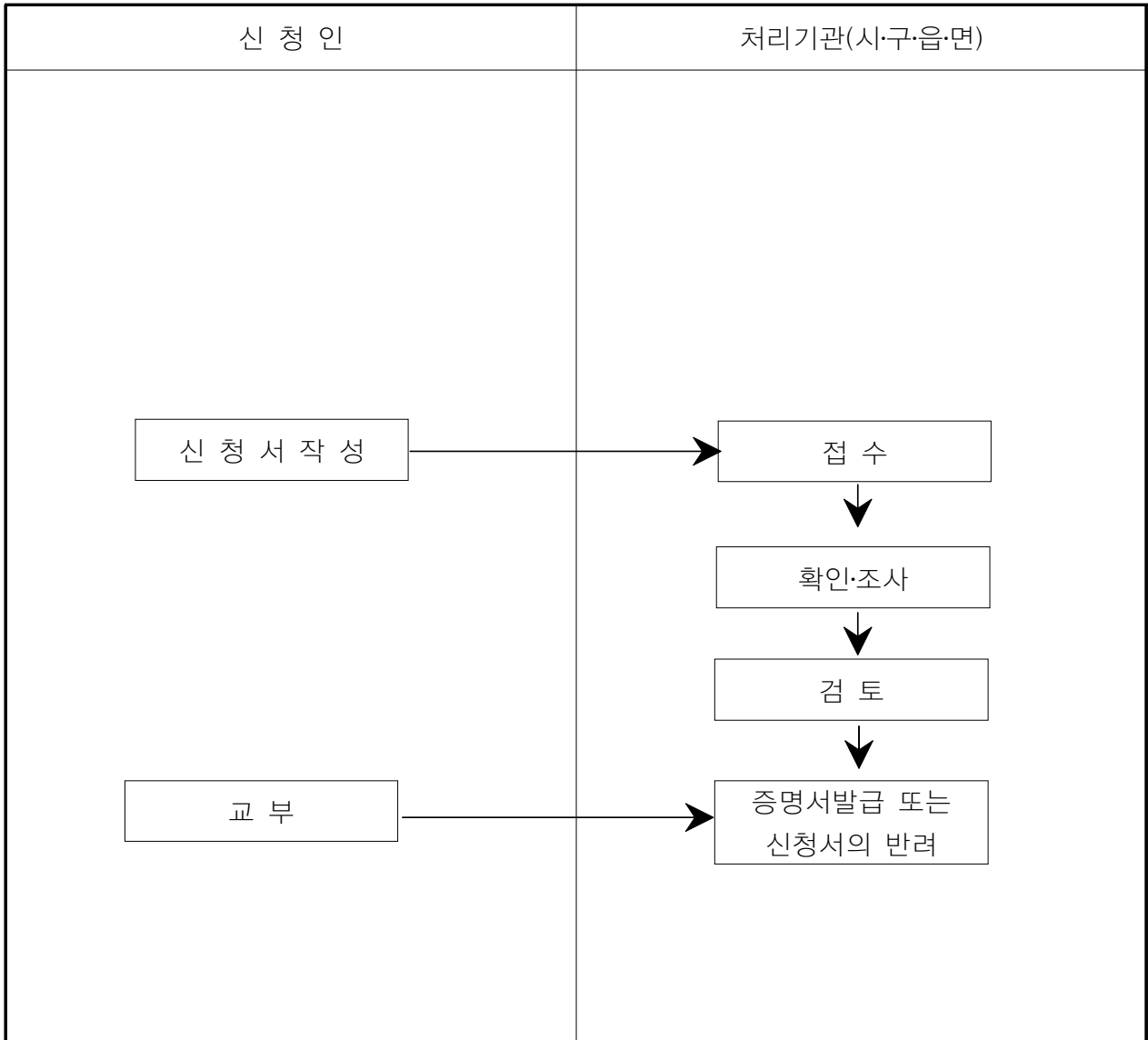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000원

3. 유의(참고)사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업무흐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 수 * 제 호	처리기간							
처 리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 득 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농업 인 신 규 영 농 주 말 · 체 험 영 농 법 인 등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 득 의 시 표	⑦소 재 지					⑪농지구분			
	시·군	구·읍·면	리·동	⑧지번	⑨지목	⑩면적 (㎡)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진흥 지역 밖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말 · 체 험 영 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 등			
<p>「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취득자(신청인)</p> <p>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p>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신청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p>					법인등기부등본 ↓ ↓ ↓	「농지법」 제74 조에 따름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않습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div data-bbox="264 1294 424 138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신청서 작성</div> <div data-bbox="264 1787 424 187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교 부</div>	<div data-bbox="970 1294 1193 138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접 수</div> <div data-bbox="970 1480 1193 15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확인·조사</div> <div data-bbox="970 1637 1193 170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검 토</div> <div data-bbox="970 1787 1193 187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div>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주재배 작 목	자 경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주재배 (예정) 작 목	임 차 (예 정)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⑮ 특 기 사 항								
<p>※ 기재상 주의사항</p> <p>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p> <p>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p> <p>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p> <p>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p> <p>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p> <p>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p> <p>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p> <p>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p> <p>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p> <p>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p> <p>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p> <p>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p> <p>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p>								

농지전용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산업팀		10일	5,000원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농지전용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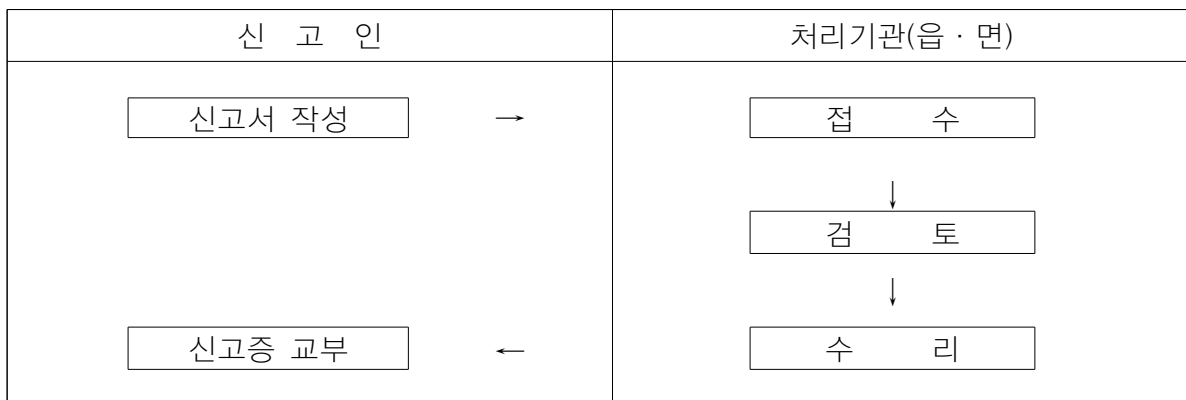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 10일

3. 유의(참고)사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업무흐름도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 ²)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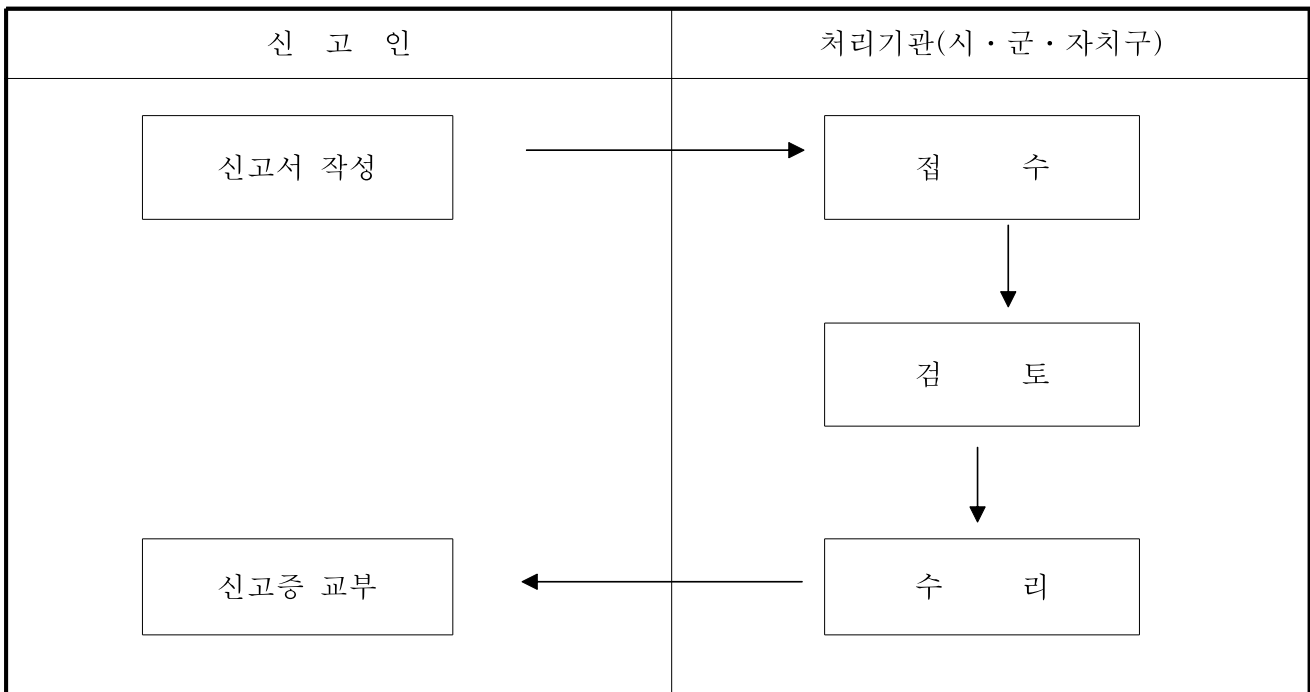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m ²)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명 : 14세 미만 ()명, 14세 이상 ()명중 농업종사자()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산업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륜자동차제작 증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신고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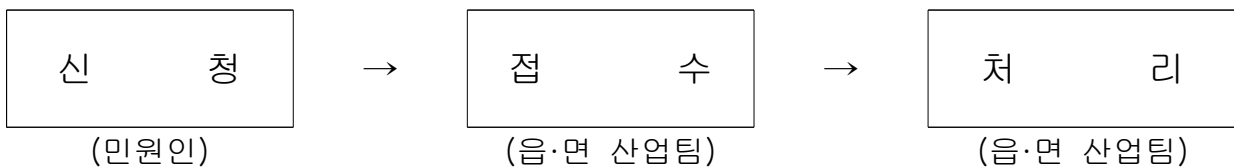
3. 수수료 및 부대비용

- 수수료 없음,
- 이륜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 : 7,000원/매, 취득세

4.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업무흐름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산업팀		즉시	없음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부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타사유)

2. 신고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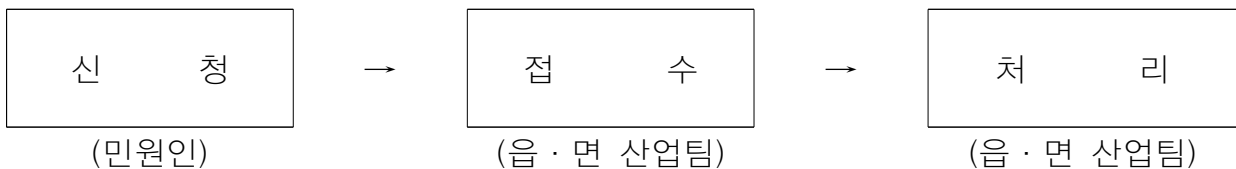
3.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4.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멸실, 도난 등의 사유로 사용 폐지한 경우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업무흐름도



대한민국 귀농·귀촌의 시작

귀농은 단순히 샐러리맨에서 농부로 직업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모두의 살아가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이다.
어쩌면 삶의 철학도 바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귀농은 가족들이 농촌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다.
지금 왜 귀농하려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귀농준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